

#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박 대 식	연구 위원
최 경 환	연구 위원
김 장 호	위촉 연구원
류 성 희	인턴 연구원

## 연구 담당

박대식	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장~제4장, 제5장 1절 및 3절, 제6장 집필
최경환	연구위원	제2장~제3장, 제5장 2절 집필
김강호	위촉연구원	제2장 집필
류성희	인턴연구원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머 리 말

---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제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나 통계자료는 별로 없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단체,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대행해 준 현대리서치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각종 사회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사례조사지역의 농어업인과 관계자,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 요 약

---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②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며, ③ 국내·외의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각종 통계 자료,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농어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대상 우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중앙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 면접조사 등을 수행하였음.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94.4%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8%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0.8%로 나타났다.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지역 및 직장) 가입률은 9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4차 한국복지패널(96.2%),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98.3%) 및 한국의료패널(93.5%)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3/4 정도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80.3%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함.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60세 미만 응답자(112명)만 따로 분석하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60%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의 약 85%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월 평균 연금보험료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74,063원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79,758원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연금 수급자’(36.7%), ‘적용 제외자’(24.5%), ‘미 가입자’(28.5%), ‘납부 예외자’(3.8%), ‘보험료 체납자’(5.6%) 등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연금 수급자’(80.4%), ‘적용 제외자’(9.4%), ‘미 가입자’(4.3%), ‘보험료 체납자’(3.6%), ‘납부 예외자’(1.4%) 등이었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혜 실태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절반 정도가 정부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들은 응답자의 3/4가량이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12.8%)도 낮았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못했다’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으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아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음.
- 60세 이상 응답 농어업인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38.9%인데 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67.9%로 나타남.
-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

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원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을 받고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음.

####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댁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6.3%가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24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54.2%,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25.0%, ‘납부시기를 놓쳐서’ 20.8% 순으로 나타남.

#####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귀댁에서는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있다’가 2.8%, ‘없다’가 97.3%로 나타남.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가입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의 가입 측면의 사각지대는 납부 예외, 국민연금 미가입, 보험료 체납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납부 예외: 4개 사례지역의 60세 미만 농어업인 112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6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 60세 미만 농어업인 51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2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이었음.
- 국민연금 미 가입: 4개 사례지역의 60세 미만 농어업인 112명 중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19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16.9%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 60세 미만 농어업인 51명 중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3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5.9%이었음. 국민연금 미 가입의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명)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5명),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명), ‘국민연금제도를 잘 몰라서’(1명) 순으로 나타남.

- 연금보험료 체납: 4개 사례지역의 경우 응답 농어업인(400명)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18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응답자(215명)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5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이었음.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나타남.

#### <수급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4개 사례지역의 경우 60세 이상 농어업인(288명)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176)이 차지하는 비율은 61.1%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60세 이상 응답자(162명)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52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32.1%이었음.
-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원으로 나타남.

###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 <자격 측면의 개선과제>

- 농어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개요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양식의 변경: 농어촌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급여 측면의 개선과제>



-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예방의료의 강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 <가입 측면의 개선과제>

-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양식의 변경: 농어촌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병역의무, 출산, 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인정제도를 강화,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확대를 검토

##### <수급 측면의 개선과제>

- 농어업인 노후 연금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①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 ②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 ③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보험에도 일정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농지연금의 개선: ①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함. ②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Benefit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benefit of farmers and fishermen,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of farmers and fishermen.

Research methods includ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field survey, mail survey, analysis of foreign cases, re-analysis of previous panel data, and so on.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400 farmers and fishermen. The mail survey was conducted among 215 field monitors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In the aspect of requirement,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health insurance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 follows: 1)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farmers and fishermen on the health insurance, and 2) application of payment notice. In the aspect of allowance,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health insurance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 follows: 1) partial support of the health insurance payments for low income farmers and fishermen, and 2) reinforcement of protective medical service.

In the aspect of subscription,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national pension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 follows: 1)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farmers and fishermen on the national pension, 2) application of payment notice, and 3) reinforcement of credit system.

In the aspect of benefit,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national pension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 follows: 1) the improvement of pension amount, and 2) improvement of farmland pension.

x

Researchers: Dae-Shik Park, Kyeong-Hwan Choi, Kang-Ho Kim,  
Seung-He Rhu

Research Period: 2011. 5 ~ 2011. 11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 내용과 방법 ..... 10

### 제2장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일반 현황

1.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 15
2.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21
3. 국민연금의 개요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29

### 제3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1.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41
2.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49
3. 소결 ..... 61

### 제4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1. 사각지대의 의미 ..... 65
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66
3.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71
4. 소결 ..... 75

### 제5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관련 외국의 사례

1. 일본 ..... 78

2. 독일 ..... 90  
3. 정책적 시사점 ..... 97

**제6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1.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 100  
2.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 104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07  
2. 결론 ..... 116

부록 1.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표 ..... 119  
부록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대상설문조사표 ..... 133  
부록 3. 제4차 한국복지패널(2009) 분석 결과 ..... 147  
부록 4.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2009) 분석 결과 ..... 154  
부록 5. 한국의료패널(2008) 분석 결과 ..... 164

참고 문헌 ..... 167

## 표 차 례

---

### 제1장

표 1-	1.	설문조사 및 우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13
------	----	--------------------------------	----

### 제2장

표 2-	1.	농림어가 및 인구 규모 .....	16
표 2-	2.	연령대별 농가 인구 .....	17
표 2-	3.	연령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 인구 비교 .....	18
표 2-	4.	전·겸업별 농가 .....	18
표 2-	5.	경지규모별 농가 .....	19
표 2-	6.	농업 경영형태별 농가 .....	20
표 2-	7.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	21
표 2-	8.	우리나라 의료보장 현황(2010) .....	22
표 2-	9.	세대 당, 1인 당 월 보험료 현황(2010) .....	23
표 2-	10.	진료비 본인부담 내용 .....	24
표 2-	11.	현행 농어촌 및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규정 .....	27
표 2-	12.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	27
표 2-	13.	2010년도 농어업인 가구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	28
표 2-	14.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	30
표 2-	15.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2011년 7월 기준) .....	31
표 2-	16.	연도별·종별 연금보험료 징수율(2011년 7월 기준) .....	32
표 2-	17.	연령대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11년 7월 기준) .....	34
표 2-	18.	금액 규모별 국민연금(월 급여) 수급자 현황 .....	35
표 2-	19.	금액 규모별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현황 .....	36
표 2-	20.	국민연금 급여종별 평균지급액 .....	37

표 2-21.	국민연금보험료의 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	37
표 2-2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	39
표 2-23.	연금보험료 연도별 지원기준	39

### 제3장

표 3- 1.	건강보험(의료보장) 가입 유형	42
표 3-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월)	43
표 3- 3.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부담 정도	44
표 3- 4.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지	45
표 3- 5.	민간 건강보험 가입 여부	45
표 3- 6.	민간 건강보험 가입의 주된 이유	46
표 3- 7.	가족 구성원 중 만성 질환자 유무	47
표 3- 8.	(보건)의료기관 이용 빈도(월)	48
표 3- 9.	월 평균 의료비	48
표 3-10.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49
표 3-11.	국민연금 보험료(월)	50
표 3-12.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51
표 3-13.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 정도	52
표 3-1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혜 여부	53
표 3-15.	국민연금 수급 여부	55
표 3-16.	국민연금 급여액(월)	56
표 3-17.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가입기간	56
표 3-18.	노후생활 준비 정도	58
표 3-19.	노후생활 준비의 충분 정도	59
표 3-20.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	59
표 3-21.	적정 은퇴연령	60



## 제4장

표 4- 1.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유무 .....	67
표 4- 2.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연체) 기간 .....	68
표 4- 3.	건강보험료 체납(연체) 이유 .....	68
표 4- 4.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연체) 후 불편한 점 .....	69
표 4- 5.	의료서비스 수혜 포기 경험 여부 .....	70
표 4- 6.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중요 이유 .....	70
표 4- 7.	보건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	71

## 제5장

표 5- 1.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	79
표 5- 2.	보험료 보조 대상자와 국고보조액 .....	85
표 5- 3.	농업자연금제도와 여타 공적 연금제도의 비교 .....	87

## 그림 차례

---

### 제5장

그림 5-1. 일본의 연금 구조 .....	81
-------------------------	----

### 제6장

그림 6-1.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앞면) .....	101
그림 6-1.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뒷면) .....	102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50%(농식품부 28%, 보건복지부 22%)를 지원함.
  -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 기준소득(2011년 현재 79만원) 이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 지원하고, 기준소득 이상은 월 35,550원을 정액 지원
  
- 그러나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제외되고 있음.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의 28%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경감 혜택을 받는 농어가는 435천 세대(2011년 기준)에 불과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 종사자(농업소득>농외소득)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

는 농어업인은 219천명(2011년 기준)에 불과함.

- 즉, 적용 제외, 납부 예외,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이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농어업인이 상당히 많음.
-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나 통계자료는 별로 없는 실정임.
- 적용 제외, 납부 예외,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인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의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전체 농어업인 세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농어업인은 어떻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혹은 사각지대에 있는지?
  - 연금 가입대상 농어업인(18~59세)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의 실태와 이들의 노후대책은 무엇인가?
  - 60세 이상 고령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혜 실태는?
- 따라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임.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②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며, ③ 국내·외의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2.1. 건강보험 관련 연구

#### 2.1.1. 건강보험 사각지대 및 보험료 지원 관련 연구

- 안희원(2007)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정된 의료안전망의 보완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음.
  - 저소득·취약계층 166만 명 중에서 건강보험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담당할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료를 제공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신현웅(2009)에 의하면 의료빈곤층은 자격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지 못하여 체납 등으로 자격 정지된 의료빈곤층이 있을 수 있고, 보장성 측면에서는 비 급여나 고액진료비로 인해서 진료 필요가 있지만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빈곤층이 있음.
  - 대안으로는 일시적 경제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및 보험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대불금제도의 도입, 보장성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신영석(2009)은 경제위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현실을 점점 어둡게 하고 있다고 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를 제한 받는 세대가 증가

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하여 의료비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 또한 점증하고 있다고 봄.

- ‘의료구제기금’ 조성을 통하여 보험료나 본인부담 의료비를 대불해주는 방안과 공공요양기관 이용 시 비 급여 본인부담에 대해 본인부담 보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함.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① 약 73만 가구의 건강보험 체납자와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자격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나 있음. ② 비급여의 과도함으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전체 국민의 약 19%에 이르고 있음. ③ 자격 및 급여 측면에서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신자은(2009)은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결정 요인을 소득, 의료이용 경험,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의 객관적 요인과 전반적인 정서 상태를 반영하는 생활만족도라는 주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에 근거한 실증분석 결과, 건강보험제도 만족도는 소득, 건강보험 가입, 교육수준, 그리고 건강상태와 음의 관계를 가지며 생활만족도와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의 결정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소득 변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김진수 외(2009)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특성의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특성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보험료를 체납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신영석 외(2010)는 건강보험의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도출하여 건강

보험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 보장성 강화, 재정안정, 지불보상체계의 개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적정 수가에 대한 모색 등 부문별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유원섭(2010)은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장기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와 장기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급여제한으로 인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① 급여제한 대상자 예외 규정 마련, ② 보험료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 적용 폐지
- 장기체납 예방 및 관리 방안: ① 보험료 경감제도 개선, ② 체납자의 보험급여 사후상환제 도입, ③ 사회보험심판원 설치

○ 이선미 외(2010)는 건강보험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규모를 산출하고,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특성을 파악하였음. 또한 건강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방안: ① 의료욕구가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②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강화, ③ 소득 및 의료욕구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④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우선 순위화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①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신설, ② 담배부담금의 인상, ③ 국고지원의 확대, ④ 민간기금의 확보

## 2.1.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관련 연구

○ 정명채 외(2000)는 ①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② 농어민의 소득 및 보험료 부담능력 파악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③ 바람직한 농어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였음.

- 최경환·박대식(2006)은 현행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취지를 재조명해 보고,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실태 파악을 토대로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감대책의 기본방향: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소득재분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여러 가지 차등경감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최경환(2008)은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음.
  - 65세 이상 노인 중 월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의약분업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타 지역과 동일하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김태완 외(2009)는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시 재산, 자동차 요소를 배제하는 방법과 경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농어촌 지역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더 경감해 주는 방안보다는 농어촌지역 중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생계형 체납세대로 판정될 경우 국고에서 50%를 지원해주거나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다고 봄.
  - 치료가 필요했지만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농어촌 14.3%, 대도시 12.4%, 중소도시 10.4%로 나타남.



## 2.2. 국민연금 관련 연구

### 2.2.1.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보험료 지원 관련 연구

- 석재은(2002)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노령세대의 경우 현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되며, 근로연령세대의 경우는 미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제도에 가입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된다고 봄.
  - 공적 연금의 성숙단계까지는 공적 연금의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노령계층 중 저소득층에게 약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경로연금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고 내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법·제도적 및 행정적으로 사회보험의 제도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적용관리를 해야 함.
  - 현행 공적 연금의 기본 틀을 1소득자 1연금이 아니라 1인 1연금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연명(2003)은 사각지대의 해소는 계층에 따라 다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혹은 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사각지대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음.
- 석재은(2003)은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 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다고 보았음.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 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신혜숙(2005)은 국민연금사각지대 개선방향으로 ① 개인계정화(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 ② 급여수급의 법제화 및 홍보 강화, ③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 확대, ④ 실업의 리스크 최소화, ⑤ 납부예외제도 폐지 및 연금 크레딧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음.

- 이광석(2008)은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는 소득의 계속성과 연금체감도가 중요하며, 소득의 계속성은 휴면 네트워크에 의한 것과 국가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봄.
  - 휴면 네트워크에 의한 소득의 계속성은 스폰서제도의 도입이나 가족이나 촌락공동체에 의한 풀제 도입을 제시하였음.
  - 대다수의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이 그 이유로 나타났음.
- 윤석명 외(2009)는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을 제시함.
  - 전체 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의 비율(2009년)은 27% 수준임.
  - 납부예외자의 납부예외사유는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2.2.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관련 연구

- 김용하(1996)는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과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① 가입률의 저조, ② 징수율의 부진, ③ 불성실한 소득신고로 정리하였음. 개선대책으로는 ① 가입률 및 징수율 제고 방안, ② 자영자에 대한 소득과 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가입률 및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②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③ 가입독려와 관리인력 확충, ④ 체납처분 유예조치에 대한 재검토, ⑤ 업무위탁관계의 재검토를 제시함.
  - 자영자에 대한 소득과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① 자영자와 피용자의 전체 가입자 소득월액기준을 분리·계산하는 방법 검토, ② 신고

소득기준 연금보험료 부과에서 인정소득에 의한 연금보험료 부과 방법으로 전환 검토, ③ 소득과약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자영자에 대해서는 정액각출·정액급여방식 적용을 제시함.

- 김성숙(2000)은 국민연금 농어민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활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소득추정방안의 개발을 통하여 적정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
  - 소득자료 유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소득을 제시하였음.
- 김성숙 외(2001)는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 사업성취 수준, 사업수행 상 야기된 문제점, 제도상 문제점을 밝혀내고,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여, 농어촌지역연금이 사업장 및 도시지역 연금과 형평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였음.
  - 제도 내실화 대책으로는 ①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② 소득 상향조정방안, ③ 징수율 제고방안, ④ 보험료 국고지원 개선방안, ⑤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조정방안 검토, ⑥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⑦ 홍보대책을 제시함.
  - 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① 정액기여-정액급여방식 검토, ② 수급구조 및 급여제도 개선 검토를 제시함.
- 이상선(2002)은 농어민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가입률 및 보험료 징수율의 저조, ② 사업장 및 자영업 가입자와의 소득격차에 의한 형평성 문제, ③ 낮은 급여액으로 인한 소득보장 미비 등을 지적하였음.
- 박대식·최경환(2006)이 전국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노인 가구의 국민연금 수혜 비율은 16.9%로 나타났음.
  - 1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2%

- 최경환·황의식(2007)은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금후 농업인 노후소득대책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음.
  - 64세 이하(35명은 65세 이상)의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청장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3.2%에 불과했음.
  - 배우자의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함.
- 박대식 외(2009a)에 따르면, 영세·고령농은 각종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장 많이 가입하였으며(24.7%), 민간보험 가입은 미미하였음.
  - 70%의 영세·고령농은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었음.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도시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신고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아 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적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 연구 내용과 방법

#### 3.1. 연구 내용

-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일반 현황
  -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의 개요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사각지대의 의미
  - 농어업인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농어업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관련 외국의 사례
  - 일본과 독일의 관련 정책 검토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 기본방향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 3.2. 연구 방법

- 기존 자료 조사
  - 국내외의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관련 자료의 정리 및 재분석

## ○ 농어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 4개 농어촌 유형(대도시근교농촌, 평야농촌, 중·산간농촌, 어촌)별로 각각 100명 씩 총 400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 및 수혜 실태, 노후대책 등에 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 \* 4개 사례조사지역(홍성군 서부면, 봉화군 춘양면, 이천시 설성면, 김제시 성덕면)에서 1~2개 행정리의 농어가의 가구주를 전수 조사함.
- \* 면접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현대리서치)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함.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대상 우편조사

- 전국에 거주하는 현지통신원 1,920명 중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그중에서 215명이 설문지를 회송하였음(응답 회수율: 71.7%).
- 설문내용은 농어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와 동일함.

## ○ 전문가 의견 수렴

-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자문을 구함.
-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관련 전문가, 사회보험 전공 대학교수, 보건복지부 및 농식품부의 사회보험 담당자, 농어업인 관련 단체 등

## ○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담당자 면접조사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의 담당자
-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관련 업무 담당자

### 3.3. 설문조사 및 우편조사 대상 농어업인의 일반적 특성

- 4개 사례지역(홍성군 서부면, 봉화군 춘양면, 이천시 설성면, 김제시 성덕면)의 면접 설문조사 응답자들(400명)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대상 우편조사 응답자들(215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음.

표 1-1. 설문조사 및 우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88	47.0	204	95.3
	여자	212	53.0	10	4.7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29	57.3	24	11.2
	중학교 졸업	83	20.8	68	31.6
	고등학교 졸업	71	17.8	106	49.3
	전문대학 졸업 이상	15	3.8	17	7.9
가구 형태	독신가구	97	24.3	10	4.7
	1세대 가구(부부)	203	50.7	140	65.4
	2세대 가구(부부+자녀)	61	15.3	44	20.6
	편부모+자녀	14	3.5	9	4.2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15	3.8	10	4.7
	조부모+손자녀	8	2.0	0	0
	기타	2	0.5	1	0.5
연령	40대 이하	41	10.3	7	3.3
	50대	71	17.8	46	21.4
	60대	96	24.0	44	20.5
	70대 이상	192	48.0	118	54.8
농어가 유형	전업농어가	333	83.3	172	81.5
	1종 겸업농어가	26	6.5	18	8.5
	2종 겸업농어가	41	10.3	21	10.0

표 1-1. 설문조사 및 우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계속)

구분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 수	1명	97	24.3	23	10.7
	2명	215	53.8	130	60.7
	3명	43	10.8	19	8.9
	4명	24	6.0	21	9.8
	5명	14	3.5	11	5.1
	6명 이상	7	1.8	10	4.6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	199	49.8	26	12.2
	500만원~1,000만원 미만	97	24.3	56	26.3
	1,000만원~2,000만원 미만	59	14.8	56	26.3
	2,000만원~3,000만원 미만	22	5.5	30	14.1
	3,000만원~4,000만원 미만	12	3.0	25	11.7
	4,000만원 이상	11	2.8	20	9.4



## 제 2 장

###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일반 현황

#### 1.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 1.1. 농림어가 및 인구 규모

- 2010년 12월 1일 현재 전국의 농림어가는 134만 3천 가구로 2005년 보다 11만 1천 가구(7.6%)가 감소함(표 2-1 참조).
  - 농림어가는 동지역(18.6%) 보다 읍·면지역(81.4%)에 대부분 분포함.
- 농림어가 인구는 349만 9천 명으로 2005년 보다 43만 2천 명(11.0%) 감소함(표 2-1 참조).
  - 성별로는 여자(178만명)가 남자(171만 9천 명) 보다 6만 1천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농림어가 비중은 9.2%에서 7.7%로, 농림어가 인구 비중은 8.4%에서 7.3%로 줄어들었음(표 2-1 참조).

표 2-1. 농림어가 및 인구 규모

단위: 천 가구, 천 명, %

	2005		2010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농림어가 <sup>1)</sup>	1,454	100.0	1,343	100.0	△111	△7.6
동 지역	241	16.6	250	18.6	9	3.8
읍면지역	1,213	83.4	1,092	81.4	△120	△9.9
농림어가 인구 <sup>2)</sup>	3,931	100.0	3,499	100.0	△432	△11.0
남 자	1,924	49.0	1,719	49.1	△206	△10.7
여 자	2,006	51.0	1,780	50.9	△226	△11.3
농림어가 비중 <sup>3)</sup>	9.2		7.7		△1.5%p	
농림어가인구 비중 <sup>4)</sup>	8.4		7.3		△1.1%p	

주: 1), 2) 농림어업총조사의 가구(인구)를 합한 것으로 일부 겸업가구는 중복  
 3), 4)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체가구, 전체인구에 대한 농림어가 및 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2011)

## 1.2. 농가의 연령별 구성

### □ 연령대별 농가 인구

- 연령대별 농가인구 비중(2010년)은 70대 이상이 21.5%로 가장 높고, 60대, 50대 순이며, 50대 이상이 6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2 참조).
  - 농가인구는 2005년에 비해 7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27.3%)와 10대 미만(22.0%)에서 감소율이 높음.
- 성비는 96.1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초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40대 이하의 남초, 50대 이상은 여초 현상을 나타냄(표 2-2 참조).

표 2-2. 연령대별 농가 인구

단위: 천 명, %

	2005				2010				증감	증감률
	합 계	남	여	성비	합 계	남	여	성비		
합 계	3,434 (100.0)	1,677 (100.0)	1,757 (100.0)	95.4	3,063 (100.0)	1,501 (100.0)	1,562 (100.0)	96.1	△371	△10.8
0~9세	182 (5.3)	96 (5.7)	86 (4.9)	112.1	142 (4.6)	74 (4.9)	68 (4.4)	108.8	△40	△22.0
10~19세	311 (9.1)	165 (9.9)	146 (8.3)	113.4	261 (8.5)	138 (9.2)	123 (7.9)	112.5	△49	△15.9
20~29세	292 (8.5)	161 (9.6)	132 (7.5)	122.1	213 (6.9)	111 (7.4)	102 (6.5)	108.4	△80	△27.3
30~39세	248 (7.2)	139 (8.3)	109 (6.2)	126.9	217 (7.1)	121 (8.1)	96 (6.2)	125.5	△31	△12.4
40~49세	449 (13.1)	216 (12.9)	232 (13.2)	93.2	364 (11.9)	182 (12.2)	181 (11.6)	100.7	△85	△18.9
50~59세	601 (17.5)	282 (16.8)	319 (18.2)	88.2	587 (19.2)	278 (18.5)	309 (19.8)	90.1	△14	△2.3
60~69세	760 (22.1)	352 (21.0)	408 (23.2)	86.2	622 (20.3)	297 (19.8)	324 (20.8)	91.8	△139	△18.2
70세 이상	591 (17.2)	266 (15.9)	325 (18.5)	81.9	657 (21.5)	299 (19.9)	358 (23.0)	83.4	67	11.3

자료: 통계청(2011)

## □ 연령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 인구의 비교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31.8%로 2005년 대비 2.7%p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11.3%)보다 3배 정도 높음(표 2-3 참조).

표 2-3. 연령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 인구 비교

단위: 천 명, 세, %

	2005		2010		증감		전체인구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증감	증감률	인구	구성비
합 계	3,434	100.0	3,063	100.0	△371	△10.8	47,991	100.0
0~14세	335	9.8	270	8.8	△65	△19.3	7,787	16.2
15~64세	2,099	61.1	1,820	59.4	△279	△13.3	34,779	72.5
65세이상	999	29.1	973	31.8	△27	△2.7	5,425	11.3
중위연령	54.1		55.7		1.6		38.1	
고령화율	29.1		31.8		2.7%p		11.3	

주: 고령화율은 65세이상 인구 비중임(7~14% 미만: 고령화사회, 14~20% 미만: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자료: 통계청(2011)

### 1.3. 농어업인의 경영 구조

#### □ 전·겸업

○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53.3%(62만7천 가구)는 전업농가, 46.7%(55만 가구)는 겸업농가로 나타남(표 2-4 참조).

- 2005년에 비해 겸업농가 비중은 9.3%p 상승하였으며 특히, 2종 겸업농가 비중이 30.3%로 5.8%p 증가함.

표 2-4. 전·겸업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2005		2010		증 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증감	증감률	(%p)
합 계	1,273	100.0	1,177	100.0	△96	△7.5	
전업농가	796	62.6	627	53.3	△169	△21.2	△9.3
겸업농가	477	37.4	550	46.7	73	15.3	9.3
1종 겸업 <sup>1)</sup>	165	13.0	193	16.4	28	17.3	3.4
2종 겸업 <sup>2)</sup>	312	24.5	356	30.3	45	14.3	5.8

주: 1) 1종 겸업: 농업수입 > 농업이외 수입

2) 2종 겸업: 농업수입 < 농업이외 수입

자료: 통계청(2011)

## □ 경지규모

- 경지규모 1.0ha미만 농가는 76만 1,000 가구(64.5%), 3.0ha이상 농가는 9만7천가구(8.2%)로 나타남(표 2-5 참조).
  - 2005년에 비해 0.5~3.0ha미만 농가는 줄고, 0.5ha미만 농가와 3.0ha이상 농가는 각각 3.2%, 3.4%증가함.
- 농가의 총 경지면적은 144만9천ha로 2005년 대비 4.0% 감소하였으나 농가당 경지면적은 1.23ha로 0.04ha 증가함(표 2-5 참조).
  - 농가당 경지면적: 1.19ha('05) → 1.23ha('10)

표 2-5. 경지규모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합 계	경지 없는 농가	경지규모별 농가						경지 면적 (천ha)	농가당 경지면적 (ha)
			소계	0.5ha 미만	0.5~ 1.0	1.0~ 2.0	2.0~ 3.0	3.0ha 이상		
2005	1,273 (100.0)	17 (1.3)	1,256 (98.7)	458 (36.0)	331 (26.0)	281 (22.1)	93 (7.3)	93 (7.3)	1,511	1.19
2010	1,177 (100.0)	14 (1.2)	1,164 (98.8)	473 (40.1)	288 (24.4)	229 (19.4)	78 (6.6)	97 (8.2)	1,449	1.23
증 감	△96	△3	△92	15	△43	△52	△15	3	△61	0.04
증감률	△7.5	△20.3	△7.3	3.2	△13.0	△18.6	△16.1	3.4	△4.0	3.4

주: 경지면적은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조사된 농가의 경지면적이며, 표본조사인 「농업면적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2011)

## □ 농업 경영형태

- 농가의 경영형태(2010년 기준)는 논벼(44.4%), 채소(19.0%), 과수(14.5%), 식량작물(9.9%) 순으로 나타남(표 2-6 참조).
  - 2005년에 비해 논벼(6.5%p) 농가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과수(3.1%p), 채소(0.9%p), 관상작물(0.8%p), 특용작물(0.8%p), 기타작물(0.5%p), 축산(0.4%p)의 비중은 높아짐.

표 2-6. 농업 경영형태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합 계	논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과수	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2005	1,273 (100.0)	648 (50.9)	126 (9.9)	230 (18.1)	28 (2.2)	145 (11.4)	10 (0.8)	3 (0.3)	82 (6.5)
2010	1,177 (100.0)	523 (44.4)	116 (9.9)	224 (19.0)	35 (3.0)	170 (14.5)	19 (1.6)	9 (0.8)	81 (6.9)
증 감	△96	△125	△10	△6	7	25	8	5	△1
(%p)		(△6.5)	(0.0)	(0.9)	(0.8)	(3.1)	(0.8)	(0.5)	(0.4)

주: 농가의 주된 경영형태에 따라 분류  
 자료: 통계청(2011)

## □ 농축산물 판매규모

- 농축산물 판매규모별(2010년 기준)로는 1천만 원 미만 농가가 6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3천만 원 이상 농가 비중도 12.9%로 나타남(표 2-7 참조).
- 2005년에 비해 판매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감소한 반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없는 농가는 증가함.

표 2-7.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합 계	판매 없음	120만 원 <sup>1)</sup> 미만	120 ~1,000	1,000 ~3,000	3,000 ~5,000	5,000 ~1억원	1억원 이상
2005	1,273 (100.0)	120 (9.5)	181 (14.2)	568 (44.6)	273 (21.4)	73 (5.7)	41 (3.2)	16 (1.3)
2010	1,177 (100.0)	125 (10.6)	148 (12.6)	525 (44.6)	226 (19.2)	73 (6.2)	53 (4.5)	26 (2.2)
증 감	△96	5	△33	△42	△46	△1	12	10
증감률	△7.5	3.9	△18.2	△7.5	△17.0	△0.7	29.9	58.5

주: 1) 2005년은 판매금액 100만 원 미만의 숫자임.

자료: 통계청(2011)

## 2.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및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2.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 구분됨(표 2-8 참조).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함.
  -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함.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군(郡)지역 가입자(2010년 기준)는 886천 세대임.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제도적으로 두 가지(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중 하나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 2010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6.7%인 4,891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3%인 167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11).

표 2-8. 우리나라 의료보장 현황(2010)

단위: 천 명, 천 세대

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직장			지역			소계	1종 <sup>1)</sup>	2종 <sup>2)</sup>
		소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소계	군	도시			
50,581	48,907	32,384	27,747	4,637	16,523 (7,940)	1,791 (886)	14,732 (7,054)	1,674	1,071	603

주: ( )는 세대수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
-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농어촌 지역에는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의 자영업자까지 포함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됨.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됨.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 능력자



- 보험료
    -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보험료)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지역: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점수당 보험료를 적용
  - 국고보조: 보험료 수입의 2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지원 14%
    - 담배 부담금 6%
-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 직장 가입자
    -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2011년도 보험료율은 5.64%
  - 지역 가입자
    -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세대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함.
    - 2011년 부과점수 당 금액: 165.4원
  - 2010년의 경우 세대당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더 높는데 비해 1인당 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9 참조).

표 2-9. 세대 당, 1인 당 월 보험료 현황(2010)

구분	세대 당 월 보험료(원)	1인 당 월 보험료(원)
평균	70,989	29,765
직장 가입자	73,399	28,659
지역 가입자	67,168	31,899

주: 1인당 월 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0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

○ 보험급여

-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 현금급여: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 <표 2-10>에는 진료비 본인부담 내용이 요약되어 있음.

표 2-10. 진료비 본인부담 내용

구분	진료비 본인부담 내용
건강 보험	<p>&lt;외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li> <li>○ 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면지역), 50%(동지역)</li> <li>○ 병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면지역), 40%(동지역)</li> <li>○ 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li> <li style="padding-left: 20px;">(단,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 이하이면 1,500원)</li> <li>○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30~50%</li> <li style="padding-left: 20px;">(단,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1,200원)</li> </ul> <p>-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초과 시 총액의 30%</li> <li>·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이하 시 정액제 적용</li> </ul> <p>○ 6세 미만 아동: 상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p> <p>&lt;입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입원 환자 식대는 50%)</li> <li>○ 신생아 및 자연분만: 면제</li> <li>○ 6세 미만 아동: 10%</li> </ul> <p>&lt;암 등 중증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뇌혈관·심장질환: 입원 및 외래 5%</li> <li>○ 만성 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 입원 및 외래 10%</li> </ul> <p>&lt;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 및 외래: 면제(단, 입원시 식대 20%)</li> </ul> </li> <li>○ 희귀난치성 질환외 질환의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 본인부담 면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일부 10%)</li> <li>- 외래: 본인부담 면제, 정액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일부 10%)</li> </ul> </li> </ul>

표 2-10. 진료비 본인부담 내용(계속)

구분	진료비 본인부담 내용
의료 급여	<1종> ○ 외래 본인부담금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 CT, MRI, PET 등: 급여비용의 5% ○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 입원시 식대의 20%(중증 질환자 5%)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의 50%, 동 기간 5만 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의 전액 지원
	<2종> ○ 외래 본인부담금 - 1차 1,000원, 2차 급여비의 15%(만성질환 1,000원), 3차 급여비의 15% - 약국 500원 - CT, MRI, PET 등: 급여비용의 15% ○ 입원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의 10% - 입원시 식대의 20%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의 50%, 매 6개월간 60만 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의 전액 지원 ○ 중증질환자(암 및 뇌혈관·심장질환자)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자료: 보건복지부. 2011.9. 「2011 주요업무참고자료」.

## 2.2.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경감)

###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경감)의 목적

-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 ○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 3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 2

## ○ 국민건강보험료의 경감

- 지역, 직역 및 세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경감하며, 경감 근거는 법령 등에 규정함.
- 경감률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세대별 월 부과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감률은 도서벽지경감(50%) ⇒ 농어촌경감(22%)(농어업인경감(28%)) ⇒ 세대 경감(30%) 순으로 적용

## ○ &lt;표 2-11&gt;에는 현행 농어촌 및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규정이 요약되어 있음.

- 농어촌 및 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
- 농어촌: 읍·면 및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 농어촌: 특·광역시 내 농업 진흥, 개발제한 구역 등

## ○ 국민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절차: 농어업인 확인서(1차: 이·통장 확인, 2차: 읍·면·동장 확인)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 제출

표 2-11. 현행 농어촌 및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규정

구분	경감율	적용 요건	비고
농어촌 경감	22%	군지역 및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함(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초과 세대 중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주소지로 직권 적용
농어업인 경감	28%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농어촌 지역 거주 세대 및 동의 녹지·관리지역(농어촌),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농업·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지원) 혜택을 받는 농어가(2011년 기준)는 436천 세대로 나타남(표 2-12 참조).

표 2-12.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천 세대, 억 원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예산)
국고 지원율	18%	28%	28%	28%	28%	28%	28%
월평균 지원 세대	603	521	504	484	457	435	436
예산	666	1,359	1,431	1,559	1,707	1,626	1,544
지원액	666	1,340	1,431	1,559	1,559	1,626	1,544

\* 2010년 지원액은 세수 부족으로 2011.1월에 이월 집행된 110억 원을 포함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 ○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고지서를 발부함.
- 농어업인은 경감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함.

## ○ 농어업인 가구의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실 부담액 기준)는 55,498원으로 나타남(표 2-13 참조).

표 2-13. 2010년도 농어업인 가구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원

구분	지역가입자 부과액	농어업인 부과액	농어업인 실 부담액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28%)	경감·지원액 농어촌경감 (22%)
금액	72,099	111,169	55,498	55,671	31,127	24,544

\*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받는 세대로 한정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신규대상자와 부적격 대상자를 파악·반영하기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4월, 10월 기준)를 실시함.
- 각 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제조사 결과 반영시점부터(기존 농업인이었던 경우에는 회기 내 소급적용이 가능함)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하고 부적격 대상자에게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유를 통보함.

### 3. 국민연금의 개요 및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3.1. 국민연금의 개요

-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득활동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임.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며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됨.
- 국민연금은 1988년에 산업 및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되었음.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여 별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됨.
-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됨.
-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함.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당연 적용 가입자로 1995년 7월부터 군(郡)지역 거주자 및 농어업인에게 적용되어 오다가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말함.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 등이 가입을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임.
-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로, 과거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 6월 7일부터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자,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음.
- <표 2-14>에는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표 2-14.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연도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120,374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1,890,187	-	48,710	15,760
'96.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2,085,568	-	50,514	15,640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868	168,570
'01.12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2,048,075	8,132,036	29,982	115,815
'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007,196	7,997,593	26,899	179,230
'03.12	17,181,778	423,032	6,958,794	9,964,234	2,062,011	7,902,223	23,983	234,767
'04.12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009,142	7,403,424	21,752	55,250



표 2-14.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계속)

연도별	구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05.12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1,969,017	7,154,658	26,568	23,713
'06.1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1,972,784	7,113,584	26,991	21,757
'07.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1,976,585	7,086,558	27,242	27,148
'08.12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09.12	18,623,845	979,861	9,866,681	8,67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10.12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11.07	19,565,488	1,081,815	10,770,443	8,604,603	1,952,651	6,651,952	133,866	56,576

○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1995년 12월에 189만 187명이던 것이 2011년 7월 현재 195만 2,651명으로 증가하였음.

○ <표 2-15>에는 가입종별·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지역가입자(2011년 7월 기준)는 860만 5,603명임.

표 2-15.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2011년 7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성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인원	비율				
계	19,565,488	(100.0)	10,770,443	8,604,603	133,866	56,576
남자	11,651,471	(59.6)	6,724,453	4,886,088	23,621	17,309
여자	7,914,017	(40.4)	4,045,990	3,718,515	110,245	39,267

○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소득신고 또는 정기적으로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현재 보험료율인 9%를 곱하여 산정하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

-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1988년 제도시행 시 하한액 7만 원, 상한액 200만 원으로 시작하여 1999년 1차 조정을 통해 2009년까지 하한액 22만 원에서 상한액 360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 왔음.
- 2010년부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상승률과 연동하여 매년 조정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하고 있음.
  - 2011년도의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3만 원이고, 상한액은 375만 원임.
- <표 2-16>에는 연도별·종별 연금보험료 징수율이 제시되어 있음.

표 2-16. 연도별·종별 연금보험료 징수율(2011년 7월 기준)

단위: %

구분 연도별	사업장		지역가입자					
			소계		도시		농어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5.12	98.3	99.3	<b>67.3</b>	<b>66.7</b>	-	-	67.3	66.7
'99.04	97.6	98.8	<b>72.3</b>	<b>68.4</b>	56.3	59.6	73.1	69.1
'99.12	98.0	99.1	<b>75.3</b>	<b>73.5</b>	77.9	78.5	74.3	70.3
'01.12	98.1	99.2	<b>77.2</b>	<b>73.8</b>	76.4	74.6	78.1	72.2
'02.12	98.1	99.3	<b>80.4</b>	<b>75.1</b>	78.1	74.8	83.6	75.9
'03.12	97.9	99.2	<b>82.2</b>	<b>75.1</b>	79.4	74.5	86.6	77.0
'04.12	97.2	99.1	<b>84.1</b>	<b>76.0</b>	81.6	75.4	88.3	77.7
'05.12	97.0	99.1	<b>84.6</b>	<b>75.7</b>	82.3	75.2	88.6	77.1
'06.12	97.0	99.1	<b>85.6</b>	<b>76.7</b>	84.0	76.8	88.6	76.3
'07.12	97.2	99.2	<b>87.4</b>	<b>79.4</b>	86.0	79.5	90.0	79.1
'08.12	97.4	99.2	<b>89.4</b>	<b>82.6</b>	88.1	82.6	91.7	82.6
'09.12	97.7	99.3	<b>90.8</b>	<b>85.2</b>	89.7	85.1	92.8	85.3
'10.12	97.9	99.3	<b>91.9</b>	<b>87.2</b>	91.0	87.1	93.7	87.3
<b>'11.07</b>	<b>97.9</b>	<b>99.3</b>	<b>92.0</b>	<b>87.5</b>	<b>91.1</b>	<b>87.4</b>	<b>93.8</b>	<b>87.7</b>

※ 징수율은 납부기한(매 익월 10일) 기준임(단, 1995년과 2003년은 당해 연도 12.31 수납 기준)

- 연금보험료 징수율은 농어촌의 경우(건수) 1995년 12월에 67.3%이던 것이 2011년 7월에는 93.8%로 개선되었음.
  -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연금보험료 징수율이 더 높음.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됨.
  - 연체금으로 3%가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마다 미납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며 최고 9%까지 가산됨.
-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두고 있음.
  - 납부예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납부예외 기간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됨.
-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에는 5,513천 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16,262천 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3%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5,100천 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19,229천 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5%로 감소하였음(보건복지부, 2011).
- 추납보험료제도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 동안 면제받은 연금 보험료를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가입기간을 회복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함.

○ <표 2-17>에는 연령대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2,896,533명) 중에서 88.1%(2,552,898명)가 60세 이상임.

표 2-17. 연령대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11년 7월 기준)

단위: 명

연령별 수급자		계	20세 미만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세~ 69세	70세 이상	
											계
계	계	2,896,533	10,066	1,313	15,503	64,738	252,025	1,057,223	851,307	644,358	
	남자	1,747,232	5,237	576	5,715	16,335	95,021	706,053	541,195	377,100	
	여자	1,149,301	4,829	737	9,788	48,403	157,004	351,170	310,112	267,258	
노 령	소계	계	2,397,487	-	-	-	-	99,781	971,431	773,080	553,195
		남자	1,656,919	-	-	-	-	68,355	695,847	532,139	360,578
		여자	740,568	-	-	-	-	31,426	275,584	240,941	192,617
	완전	소계	71,683	-	-	-	-	621	71,006	56	-
		남자	66,197	-	-	-	-	621	65,528	48	-
		여자	5,486	-	-	-	-	-	5,478	8	-
	감액	소계	474,729	-	-	-	-	1,170	370,229	103,299	31
		남자	365,350	-	-	-	-	1,170	277,568	86,586	26
		여자	109,379	-	-	-	-	-	92,661	16,713	5
	조기	소계	232,955	-	-	-	-	97,990	84,622	43,391	6,952
		남자	163,381	-	-	-	-	66,564	59,394	32,008	5,415
		여자	69,574	-	-	-	-	31,426	25,228	11,383	1,537
특례	소계	1,612,744	-	-	-	-	-	442,382	624,751	545,611	
	남자	1,061,312	-	-	-	-	-	293,188	413,257	354,867	
	여자	551,432	-	-	-	-	-	149,194	211,494	190,744	
분할	소계	5,376	-	-	-	-	-	3,192	1,583	601	
	남자	679	-	-	-	-	-	169	240	270	
	여자	4,697	-	-	-	-	-	3,023	1,343	331	
장애	소계	69,989	-	583	6,161	16,395	27,936	10,023	6,089	2,802	
	남자	60,044	-	411	4,999	14,889	24,405	8,210	4,965	2,165	
	여자	9,945	-	172	1,162	1,506	3,531	1,813	1,124	637	
유족	소계	429,057	10,066	730	9,342	48,343	124,308	75,769	72,138	88,361	
	남자	30,269	5,237	165	716	1,446	2,261	1,996	4,091	14,357	
	여자	398,788	4,829	565	8,626	46,897	122,047	73,773	68,047	74,004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급여로 분류됨.

-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급여에는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을 지급함.

○ <표 2-18>에는 금액 규모별 국민연금(월 급여) 수급자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대부분의 수급자(82.2%)의 국민연금(월 급여)이 40만 원 미만에 불과

표 2-18. 금액 규모별 국민연금(월 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만 원

수급자	계	금액 (월 급여)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100	100 이상		
계	계	2,896,533	103,631	1,211,727	727,961	336,282	188,578	121,005	135,087	56,178	16,084	
	남자	1,747,232	21,247	621,735	418,408	231,634	146,713	106,313	129,872	55,310	16,000	
	여자	1,149,301	82,384	589,992	309,553	104,648	41,865	14,692	5,215	868	84	
노령연금	소계	소계	2,397,487	103,558	1,004,878	562,158	263,692	154,761	107,542	129,582	55,341	15,975
		남자	1,656,919	21,212	602,828	396,488	208,482	132,214	99,542	125,760	54,500	15,893
		여자	740,568	82,346	402,050	165,670	55,210	22,547	8,000	3,822	841	82
	완전	소계	71,683	-	-	34	909	4,586	11,840	27,415	16,603	10,296
		남자	66,197	-	-	27	841	3,052	9,432	26,349	16,256	10,240
		여자	5,486	-	-	7	68	1,534	2,408	1,066	347	56
	금액	소계	474,729	19	13,272	154,476	102,661	72,809	51,182	54,222	22,505	3,583
		남자	365,350	14	5,083	97,332	76,209	60,054	47,998	52,812	22,284	3,564
		여자	109,379	5	8,189	57,144	26,452	12,755	3,184	1,410	221	19
	조기	소계	232,955	2	15,496	54,408	46,048	37,505	28,127	34,522	14,751	2,096
		남자	163,381	-	4,386	22,481	29,424	31,057	26,114	33,344	14,486	2,089
		여자	69,574	2	11,110	31,927	16,624	6,448	2,013	1,178	265	7
특례	소계	1,612,744	101,296	974,199	352,424	113,769	39,771	16,380	13,423	1,482	-	
	남자	1,061,312	20,780	593,129	276,620	102,006	38,050	15,998	13,255	1,474	-	
	여자	551,432	80,516	381,070	75,804	11,763	1,721	382	168	8	-	
분할	소계	5,376	2,241	1,911	816	305	90	13	-	-	-	
	남자	679	418	230	28	2	1	-	-	-	-	
	여자	4,697	1,823	1,681	788	303	89	13	-	-	-	

표 2-18. 금액 규모별 국민연금(월 급여) 수급자 현황(계속)

수급자	계	금액 (월 급여)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100	100이상	
장애연금	소계	69,989	44	311	16,253	25,471	15,642	7,078	4,244	837	109
	남자	60,044	33	185	12,130	21,763	14,205	6,704	4,107	810	107
	여자	9,945	11	126	4,123	3,708	1,437	374	137	27	2
유족연금	소계	429,057	29	206,538	149,550	47,119	18,175	6,385	1,261	-	-
	남자	30,269	2	18,722	9,790	1,389	294	67	5	-	-
	여자	398,788	27	187,816	139,760	45,730	17,881	6,318	1,256	-	-

주) 1/2중복급여 조정자 및 동순위자는 조정 전 금액 기준임

- <표 2-19>에는 금액 규모별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의 대부분(89.8%)은 반환일시금임.

표 2-19. 금액 규모별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만 원

수급자	금액	계	금액						
			100미만	100~200	200~400	400~600	600~800	800~1,000	1,000이상
계		11,829	3,504	1,960	3,073	1,432	783	390	687
장애일시금		307	21	19	32	25	169	37	4
반환일시금		10,621	3,083	1,801	2,894	1,297	566	326	654
사망일시금		901	400	140	147	110	48	27	29

- <표 2-20>에는 국민연금 급여 종별 평균 지급액이 제시되어 있음.  
 - 노령 농어업인들이 많이 받고 있는 특례노령연금은 월 최고 금액이 89만 4,640원이었고, 월 평균 특례노령연금은 19만 1,620원이었음.

표 2-20. 국민연금 급여 종별 평균 지급액

단위: 원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소계	완전	감액	제직자	조기	특례	분할	소계	1급	2급	3급	
최고	1,342,110	1,342,110	1,342,110	1,191,460	1,061,130	1,226,510	894,640	579,520	1,267,910	1,267,910	1,021,620	840,610	735,730
평균	273,500	277,690	794,180	416,850	491,780	444,710	191,620	145,050	397,040	543,070	431,150	334,690	230,760

주 1)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이며, 중복급여조정자 및 동순위자는 조정된 금액임

2) 반환일시금 평균지급액: 3,625,960원(최고: 83,476,130원)

3) 사망일시금 평균지급액: 2,530,450원(최고: 16,761,600원)

4) 장애일시금 평균지급액: 14,233,110원(최고: 30,527,030원)

○ <표 2-21>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가입자가 도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21. 국민연금보험료의 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

단위: %

연도별	구분		지역가입자						임의·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계		도시		농어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5.12	98.3	99.3	67.3	66.7	-	-	67.3	66.7	100.0	100.0
'99.04	97.6	98.8	72.3	68.4	56.3	59.6	73.1	69.1	100.0	100.0
'99.12	98.0	99.1	75.3	73.5	77.9	78.5	74.3	70.3	100.0	100.0
'01.12	98.1	99.2	77.2	73.8	76.4	74.6	78.1	72.2	100.0	100.0
'02.12	98.1	99.3	80.4	75.1	78.1	74.8	83.6	75.9	100.0	100.0
'03.12	97.9	99.2	82.2	75.1	79.4	74.5	86.6	77.0	100.0	100.0
'04.12	97.2	99.1	84.1	76.0	81.6	75.4	88.3	77.7	100.0	100.0
'05.12	97.0	99.1	84.6	75.7	82.3	75.2	88.6	77.1	100.0	100.0
'06.12	97.0	99.1	85.6	76.7	84.0	76.8	88.6	76.3	100.0	100.0
'07.12	97.2	99.2	87.4	79.4	86.0	79.5	90.0	79.1	100.0	100.0
'08.12	97.4	99.2	89.4	82.6	88.1	82.6	91.7	82.6	100.0	100.0
'09.12	97.7	99.3	90.8	85.2	89.7	85.1	92.8	85.3	100.0	100.0
'10.12	97.9	99.3	91.9	87.2	91.0	87.1	93.7	87.3	100.0	100.0
'11.07	97.9	99.3	92.0	87.5	91.1	87.4	93.8	87.7	100.0	100.0

주: 징수율은 납부기한(매월 10일) 기준임(단, 1995년과 2003년은 당해 연도 12.31 수납 기준)

- 2011년 7월 기준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율(건수)은 도시 지역가입자는 91.1%이고,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93.8%임.

### 3.2.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목적

-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함.

####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정액으로 지원하고,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정률 지원함.
- 기준소득금액: ('07) 530천 원 → ('08) 620천 원 → ('09) 730천 원 → ('10~'11) 790천 원

#### ○ 국민연금보험료 농어업인 지원(경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절차: 농어업인 확인서(1차: 이·통장 확인, 2차: 읍·면·동장 확인) →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사무소 제출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
- 농어업 소득이 그 외의 소득보다 많아야 함.
- 연금보험료 지원(2011년 기준)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219천 명으로 나타남(표 2-22 및 표 2-23 참조).

표 2-2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천 명, 억 원

연도	'05	'06	'07	'08	'09	'10	'11(예산)
구분							
기준 소득금액 (천 원)	440	480	520	620	730	790	790
월평균 지원인원	275	268	288	279	230	230	219
예산	605	673	753	793	904	940	869
지원액	605	673	731	793	888	940	869

표 2-23. 연금보험료 연도별 지원기준

단위: %, 원

기간별	95.7 ~ 00.6	00.7 ~ 01.6	01.7 ~ 02.6	02.7 ~ 02.12	03.1 ~ 03.6	03.7 ~ 04.6	04.7 ~ 05.6	05.7 ~ 05.12	06	07	08	09	10	11
보험료율	3%	4%	5%	6%	7%	8%	9%	9%	9%	9%	9%	9%	9%	9%
월보조금	2,200	2,940	3,670	4,400	6,600	7,700	8,800 ~ 17,600	9,900 ~ 19,800	9,900 ~ 21,600	9,900 ~ 23,400	9,900 ~ 27,900	9,900 ~ 32,850	9,900 ~ 35,550	9,900 ~ 35,550
비고	최저등급보험료의 1/3 정액지원				최저등급 보험료 1/2 정액지원		기준소득 이하: 정율(50%) 기준소득 초과: 기준 소득보험료액 1/2 정액							
기준 소득							44만 원	48만 원	52만 원	62만 원	73만 원	79만 원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신규대상자와 부적격 대상자를 파악·반영하기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4월, 10월 기준)를 실시함.
- 각 시·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제조사 결과 반영시점부터(기존 농업인이었던 경우에는 회기 내 소급적용이 가능함)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하고 부적격 대상자에게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유를 통보함.

## 제 3 장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1.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1.1. 건강보험(건강보장) 가입 유형

- ‘귀하의 건강보험(건강보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50.2%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8.2%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라고 답했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는 응답은 6.0%, ‘의료급여 1종 및 2종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4.8%임(표 3-1 참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215명)의 경우는 응답자의 39.1%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6.7%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라고 답했음.
  - 현지통신원은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을 선행 연구(조사)와 비교하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가입률은 9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4차 한국복지패널(96.2%),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98.3%) 및 한국의료패널(93.5%)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215명)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가입률은 98.1%로 나타났음. 이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중대농인 경우가 많아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임.

표 3-1. 건강보험(의료보장) 가입 유형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53	38.2	79	36.7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	24	6.0	48	22.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201	50.2	84	39.1
의료급여 1종(의료비 완전 면제) 대상	16	4.0	0	0
의료급여 2종(의료비 일부 부담) 대상	3	0.8	1	0.5
기타	3	0.8	3	1.4
계	400	100.0	215	100.0

## 1.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153명)의 보험료 (월)는 ‘2만 원 미만’이 13.1%, ‘2만 원~4만 원 미만’이 35.3%, ‘4만 원~6

만 원 미만'이 22.9%, '6만 원 이상'은 26.1%로 나타남(표 3-2 참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7만 3,575원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 중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75명)는 월 평균 보험료가 '6만 원 이상'이 63.9%임(월 평균 보험료는 8만 3,849원).

\*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2009)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47,238원임.

표 3-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월)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만 원 미만	20	13.1	5	6.7
2만 원~4만 원 미만	54	35.3	11	14.7
4만 원~6만 원 미만	35	22.9	11	14.7
6만 원~10만 원 미만	31	26.1	25	33.3
10만 원 이상	9	2.6	23	30.6
계	149	100.0	75	100.0

\* 무응답(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5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4명)은 제외함.

-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귀댁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10.5%는 '전혀 또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5.9%는 '약간 또는 매우 부담이 된다'라고 답했음. 즉, 응답자의 3/4 정도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표 3-3 참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64.8%가 '약간 또는 매우 부담이 된다'라고 답했음.

표 3-3.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부담 정도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1	0.7	3	4.1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15	9.8	7	9.5
보통이다	21	13.7	16	21.6
약간 부담이 된다	70	45.8	33	44.6
매우 부담이 된다	46	30.1	15	20.2
계	153	100.0	74	100.0

\* 무응답(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5명)은 제외함.

### 1.3.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지

○ ‘현재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19.7%만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라는 응답이 80.3%로 나타남(표 3-4 참조).

- 그러나 현지통신원은 35.0%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5.7%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지통신원은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접하거나 관심을 가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4.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지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79	19.7	69	35.0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른다	85	21.3	97	49.3
전혀 모른다	236	59.0	31	15.7
계	400	100.0	197	100.0

\* 무응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8명)은 제외함.

#### 1.4. 민간 건강보험 가입

○ ‘귀택은 민간보험회사의 건강 관련 보험(예를 들면, 질병보험, 생명보험, 암 보험 등)에 가입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27.0%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음(표 3-5 참조).

- 민간 건강보험 가입률은 현지통신원(42.1%)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27.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지통신원이 상대적으로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에 비해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나 관심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양호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5. 민간 건강보험 가입 여부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입하였다	108	27.0	83	42.1
가입하지 않았다	292	73.0	114	57.9
계	400	100.0	197	100.0

\* 무응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8명)은 제외함.

- ‘민간 건강보험(질병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한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88.9%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로 대답함. 응답자의 6.5%는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표 3-6 참조).
- 현지통신원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80.5%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로 대답하였고, 응답자의 7.8%는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함.
  - 농어업인 대다수가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농가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6. 민간 건강보험 가입의 주된 이유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	7	6.5	6	7.8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96	88.9	62	80.5
가족의 건강 상태가 나빠서	1	0.9	0	3.9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2	1.9	3	0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2	1.9	6	7.8
계	108	100.0	77	100.0

\* 무응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5명)은 제외함.

## 1.5. 국민건강보험 개선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

- ‘귀하께서 국민건강보험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는 ‘보험료가 농어업인의 형편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 인하



해야 한다’(12명),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및 서비스 종목을 확대해야 한다’(9명), ‘진료 및 치료비를 인하해야 한다’(5명),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5명),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2명) 등의 순임.

- 현지통신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및 서비스 종목을 확대해야 한다’(6명),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6명), ‘보험료가 농어업인의 형편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 인하해야 한다’(5명), ‘진료 및 치료비를 인하해야 한다’(4명),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4명) 등의 순임.

## 1.6.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 ‘귀택에는 주기적으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있다’라는 응답비율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63.5%, 현지통신원은 61.5%이었음(표 3-7 참조).

표 3-7. 가족 구성원 중 만성 질환자 유무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254	63.5	128	61.5
없다	146	36.5	80	38.5
계	400	100.0	208	100.0

\* 무응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7명)은 제외함.

- ‘귀택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병·의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응답은 ‘1~2회’가 5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4회’가 25.0%로 나타남(표 3-8 참조).

- 현지통신원의 응답은 '1~2회'가 5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4회'가 21.7%로 나타남.

표 3-8. (보건)의료기관 이용 빈도(월)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이용하지 않음	36	9.0	15	7.1
1~2회	208	52.0	127	59.9
3~4회	100	25.0	46	21.7
5~6회	23	5.8	18	8.5
7회 이상	33	8.3	6	2.8
계	400	100.0	212	100.0

\* 무응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3명)은 제외함.

- '귀택에서는 약값과 병·의원 진료비 등과 같은 의료비로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응답은 '1만 원 이하'가 24.3%, '2만 원~3만 원'이 29.3%, '4만 원~5만 원'이 18.5%, '6만 원~11만 원'이 15.3%이고, 한 달 의료비 지출이 12만 원 이상인 경우는 11.8%로 나타남.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들의 평균(월) 의료비는 6만 7천원임(표 3-9 참조).

표 3-9. 월 평균 의료비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만 원 이하	97	24.5	15	7.4
2만 원~3만 원	117	29.5	43	21.1
4만 원~5만 원	74	18.7	47	23.0
6만 원~11만 원	61	15.4	52	25.5
12만 원 이상	47	11.9	47	23.0
계	396	100.0	204	100.0

주: 1) 월 평균 의료비: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6만 7천원, 현지통신원 9만 8천원

2) 무응답(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4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1명)은 제외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에 비해서 현지통신원의 월 평균 의료비(9만 8천 원)가 더 많았음.

## 2.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2.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현황

- ‘귀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 전체(400명)의 경우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다’가 20.2%, ‘내지 않고 있다’가 79.8%이었으나, 60세 미만 응답자(112명)만 따로 분석하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다’가 59.8%, ‘내지 않고 있다’가 40.2%이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 전체(196명)의 경우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다’가 31.6%, ‘내지 않고 있다’가 68.4%이었으나, 60세 미만 응답자(112명)만 따로 분석하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다’가 84.6%, ‘내지 않고 있다’가 15.4%이었음(표 3-10 참조).

표 3-10.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 전체		60세 미만		응답자 전체		60세 미만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다	81	20.2	67	59.8	62	31.6	44	84.6
내지 않고 있다	319	79.8	45	40.2	134	68.4	8	15.4
계	400	100.0	112	100.0	196	100.0	52	100.0

- 60세 미만 응답자만 분석할 경우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약 60%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응답자의 약 85%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월 평균 연금보험료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74,063원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79,75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 표에 따르면, 매월 연금보험료로 76,500원씩 20년을 가입하면 연금으로 매월 29만 2,980원을 받을 수 있음(표 3-11 참조).
  - 임의가입의 경우 최소 연금보험료가 89,100원이고 20년 가입 시 매월 30만 8,320원을 받을 수 있음.
  - 60세 미만 농어업인의 경우에 월 연금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는 4개 사례지역은 23.8%, 현지통신원은 33.3%이었음.

표 3-11. 국민연금 보험료(월)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체		60세 미만		전체		60세 미만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3만 원 미만	4	4.9	2	3.0	5	8.1	1	2.2
3만 원~5만 원 미만	18	22.2	17	25.4	13	21.0	7	15.6
5만 원~7만 원 미만	19	23.5	15	22.4	9	14.5	7	15.6
7만 원~10만 원 미만	20	24.7	17	25.4	19	30.6	15	33.3
10만 원 이상	20	24.7	16	23.8	16	25.8	15	33.3
계	81	100.0	67	100.0	62	100.0	45	100.0

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함.

- ‘귀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연금 수급자’(36.7%), ‘적용 제외자’(24.5%), ‘미 가입자’(28.5%), ‘납부 예외자’(3.8%), ‘보험료 체납자’(5.6%) 등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연금 수급자’(80.4%), ‘적용 제외자’(9.4%), ‘미 가입자’(4.3%), ‘납부 예외자’(1.4%), ‘보험료 체납자’(3.6%) 등이었음(표 3-12 참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로 ‘연금 수급자’(80.4%)라는 비율이 특히 높았음.

표 3-12.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금 수급자	117	36.7	111	80.4
적용 제외자	78	24.5	13	9.4
미 가입자	91	28.5	6	4.3
납부 예외자	12	3.8	2	1.4
보험료 체납자	18	5.6	5	3.6
기타	3	0.9	1	0.7
계	319	100.0	138	100.0

-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귀댁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인 81명 대상)은 ‘약간 또는 매우 부담이 된다’(63.0%)가 ‘전혀 또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19.7%)보다 훨씬 높았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인 66명 대상)은 ‘약간 또는 매우 부담이 된다’(40.9%)가 ‘전혀 또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28.8%)보다 훨씬 높았음(표 3-13 참조).
-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농어업인보다 더 많았으나 현지통신원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에 따른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월)을 비교해 보면, ‘전혀 또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4만 7,938원이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자들은 8만 1,429원이며, ‘약간 또는 매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자들은 8만 237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낮을수록 부담을 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3.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 정도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중인 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중인 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1	1.2	7	10.6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15	18.5	12	18.2
보통이다	14	17.3	20	30.3
약간 부담이 된다	28	34.6	22	33.3
매우 부담이 된다	23	28.4	5	7.6
계	81	100.0	66	100.0

## 2.2.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정부에서는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이외 소득보다 많은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댁에서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81명 대상)은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37.0%,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13.6%, ‘잘 모르겠다’ 49.4%로 나타났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70명 대상)은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72.9%,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14.3%, ‘잘 모르겠다’ 12.8%로 나타났음(표 3-14 참조).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절반 정도가 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들은 응답자의 3/4 가량이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12.8%)도 낮았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총 가구소득 계층별 차이를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 계층은 ‘정부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가 48.4%,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12.9%, ‘잘 모르겠다’가 38.7%이었음. 1,000만원~3,000만원 미만 계층은 ‘정부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가 32.4%,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11.8%, ‘잘 모르겠다’가 55.9%이었음. 3,000만원 이상 계층은 ‘정부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가 25.0%,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18.8%, ‘잘 모르겠다’가 56.3%로 되었음. 즉, 총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정부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총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혜 여부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30	37.0	51	72.9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11	13.6	10	14.3
잘 모르겠다	40	49.4	9	12.8
계	81	100.0	70	100.0

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함.

- ‘귀댁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못했다’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으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아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2.3. 농어업인의 기타 연금 가입 실태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 가입
  - 4개 사례지역 농어가에서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3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 정도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7호임.
-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한 농어가는 4개 사례지역의 경우는 10호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18호임.

### 2.4.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혜 실태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4개 사례지역 및 현지통신원)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 농어업인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38.9%인데 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67.9%로 나타남(표 3-15 참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보다 국민연금



을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5. 국민연금 수급 여부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체 (400명)		60세 이상 (288명)		전체 (215명)		60세 이상 (162명)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국민연금 수급	117	29.3	112	38.9	111	51.6	110	67.9
국민연금 비수급	283	70.7	176	61.1	104	48.4	52	32.1
계	400	100.0	288	100.0	215	100.0	162	100.0

○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 원으로 나타남(표 3-16 참조).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20만 원 미만’이 3/4정도이고, ‘30만 원 이상’은 11.8%에 불과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20만 원 미만’이 2/3정도이고, ‘30만 원 이상’은 21.2%로 나타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에 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연금급여를 다소 더 많이 받고 있음.

○ ‘현재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총 몇 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결과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10명 대상)은 ‘10년 미만’이 약 2/3 정도이고 평균 가입 기간은 8.5년이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03명 대상)은 ‘10년 미만’이 52.7%이고 평균 가입기간은 9.5년이었음(표 3-17 참조).

표 3-16. 국민연금 급여액(월)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1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13명)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10만 원 미만	14	12.7	5	4.4
10만 원~15만 원 미만	58	52.7	49	43.4
15만 원~20만 원 미만	10	9.1	22	19.5
20만 원~30만 원 미만	15	13.7	13	11.5
30만 원~40만 원 미만	11	10.0	11	9.7
40만 원 이상	2	1.8	13	11.5

\*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원

표 3-17.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가입기간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1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03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년 이하	31	28.2	35	34.0
6년~10년 미만	39	34.5	19	18.5
10년~15년 미만	27	24.5	28	27.2
15년~20년 미만	9	8.2	13	12.6
20년 이상	4	3.6	8	7.7

## 2.5. 농어업인의 기타 연금 수혜 실태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 급여 수급

- 농어가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4개 사례 지역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4호, ‘사학연금’ 2호, ‘군인연금’ 2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2호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3호, ‘사학연금’ 2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이었음.
-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을 받고 있는 농어가는 4개 사례지역은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10호이었음.

## 2.6. 국민연금 개선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

- ‘귀하께서 국민연금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으로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4명, ‘연금 수령액 인상’ 2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2명, ‘연금기금 관리 철저’ 1명 등이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5명, ‘연금 수령액 인상’ 4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4명, ‘고령자에 대한 관심 확대’ 3명,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억제’ 2명, ‘연금기금 관리 철저’ 1명 등이었음.

## 2.7. 노후생활 준비

-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언제부터 준비를 해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38.8%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44.6%이었음.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45.8%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18.5%이었음(표 3-18 참조).

-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7.3%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0%로 나타났고,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8.3%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16.9%이었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에 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를 약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노후생활 준비 정도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40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195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29	7.3	39	20.0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3	8.3	33	16.9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155	38.8	87	44.6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183	45.8	36	18.5

- ‘현재 귀택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으로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가 충분하다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4개 사례지역의 경우는 ‘상당히 또는 매우 부족할 것이다’라는 응답(65.3%)이 ‘충분할 것이다 또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28.7%)보다 더 많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상당히 또는 매우 부족할 것이다’라는 응답(45.4%)에 비해서 ‘충분할 것이다 또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49.0%)이 더 많았음(표 3-19 참조).

표 3-19. 노후생활 준비의 충분 정도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40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196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충분할 것이다	5	1.2	10	5.1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10	27.5	86	43.9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96	24.0	48	24.5
매우 부족할 것이다	165	41.3	41	20.9
잘 모르겠다	24	6.0	11	5.6

- ‘노후생활비는 누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65.7%)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64.8%) 모두에서 가장 많았음.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5.0%이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2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29.2%이었음(표 3-20 참조).

표 3-20.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40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202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263	65.7	131	64.8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26	6.5	10	5.0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108	27.0	59	29.2
기타	3	0.8	2	1.0

○ ‘귀하는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농사(어업)일을 언제쯤 그만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어업)일을 계속하겠다’가 71.5%로 가장 많고, ‘70~74세’(9.8%), ‘75세 이상’(6.7%) 순으로 나타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어업)일을 계속하겠다’가 36.2%로 가장 많고, ‘70~74세’(19.2%), ‘75세 이상’(18.8%), ‘65~69세’(17.8%) 순으로 나타남(표 3-21 참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에 비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어업)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비율이 훨씬 낮았음.

표 3-21. 적정 은퇴연령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40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213명)	
	빈도	비율(%)	빈도	비율(%)
60세 미만	5	1.3	1	0.5
60~64세	20	5.0	16	7.5
65~69세	23	5.7	38	17.8
70~74세	39	9.8	41	19.2
75세 이상	27	6.7	40	18.8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어업)일을 계속 하겠다	286	71.5	77	36.2

### 3. 소결

####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건강보험(건강보장) 가입에 있어서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50.2%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8.2%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라고 답했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는 응답은 6.0%, ‘의료급여 1종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4.0%이었음.
  - 즉, 응답자의 94.4%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0%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0.8%로 나타났음.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을 선행 연구(조사)와 비교하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가입률은 9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4차 한국복지패널(96.2%),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98.3%) 및 한국의료패널(93.5%)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153명)의 보험료(월)는 ‘2만 원~4만 원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보험료는 7만 3,575원이었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3/4 정도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80.3%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함.
  - 현지통신원은 35.0%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5.7%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지통신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접하거나 관심을 가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60세 미만 응답자(112명)만 따로 분석하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60%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의 약 85%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월 평균 연금보험료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74,063원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79,758원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연금 수급자’(36.7%), ‘적용 제외자’(24.5%), ‘미 가입자’(28.5%), ‘납부 예외자’(3.8%), ‘보험료 체납자’(5.6%) 등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연금 수급자’(80.4%), ‘적용 제외자’(9.4%), ‘미 가입자’(4.3%), ‘보험료 체납자’(3.6%), ‘납부 예외자’(1.4%) 등이었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혜 실태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81명 대상)은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37.0%,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13.6%,



‘잘 모르겠다’ 49.4%로 나타났다.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절반 정도가 정부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들은 응답자의 3/4 가량이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12.8%)도 낮았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못했다’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으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아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 가입
  - 4개 사례지역 농어가에서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3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 정도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7호임.
- 60세 이상 응답 농어업인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38.9%인데 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67.9%로 나타남.
-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 원으로 나타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20만 원 미만’이 3/4정도이고, ‘30만 원 이상’은 11.8%에 불과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20만 원 미만'이 2/3정도이고, '30만 원 이상'은 21.2%로 나타남.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 급여 수급

- 농어가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4개 사례 지역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4호, '사학연금' 2호, '군인연금' 2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2호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3호, '사학연금' 2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이었음.

## 제 4 장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1. 사각지대의 의미

-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사각지대는 사전적으로는 첫째,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둘째,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셋째, 무기의 사정거리 또는 레이더 및 관측자의 관측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지형 따위의 장애로 인하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의미함.
  - 사전적 의미의 사각지대는 ① 명백하게 시각에서 배제 또는 제외된 상태, ② 시각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 ③ 시각에서 배제되지도 않고 관심도 있지만, 어떠한 장애물로 인하여 그러한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함.

- 선행연구들(구인화·백학영, 2008; 김수봉 외, 2005; 신영석, 2010; 신영전, 2010; 신현웅, 2009)에 의하면, 사회복지에서 사각지대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와 비슷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음: 첫째, 법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대상자들을 다른 사각지대로서 제도에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개념임. 둘째, 적용범위의 개념임. 이는 다시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가입 측면으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고 해당 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은 되지만 프로그램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급여 수급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임. 셋째, 급여수준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는 급여의 접근성 여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여의 전액부담에 의한 지불능력 상실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임.
  - 이 연구에서는 사각지대를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함.
- 그리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자격 측면과 급여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가입 측면과 수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함.

## 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2.1.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법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자격 측면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응답자의 94.5%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0%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5%이었음.
  - 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함.
  - 국민건강보험에서는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급여를 제한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곤란과 중증 또는 만성 장애·질병으로 인한 체납세대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보험료 부담의 단순회피로 인해 급여정지가 된 경우나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단순회피형’ 체납세대는 진정한 의미의 사각지대라고 하기 어려움.
- ‘귀택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378명) 중에서 24명(6.3%)이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1 참조).
- 한국꺄럽조사연구소(2003)의 조사에서는 농가의 국민건강보험료 연체 경험 비율은 7.4%였음.

표 4-1.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유무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빈도	비율(%)
있다	24	6.3
없다	354	93.7
계	378	100.0

\* 무응답 22명은 제외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자(24명)에게 체납(연체)기간을 물어본 결과, ‘1개월~6개월 이하’가 87.5%, ‘7개월 이상’이 12.5%로 나타남(표 4-2 참조).

- 평균 체납 기간: 9개월

표 4-2.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연체) 기간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빈도	비율(%)
1개월~6개월 이하	21	87.5
7개월 이상	3	12.5
계	24	100.0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자(24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4.2%(40.0%),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25.0%, ‘납부시기를 놓쳐서’ 20.8% 순으로 나타남(표 4-3 참조).

표 4-3.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연체) 이유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빈도	비율(%)
납부시기를 놓쳐서	5	20.8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6	25.0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3	54.2
계	24	100.0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24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하였을 때 귀하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불편

한 점이 없었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음(표 4-4 참조).

-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하였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은 ‘체납 처분(압류, 공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20.8%),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점’(8.3%), 그리고 ‘병의원을 이용한 후에 공단으로부터 독촉장 또는 환수금 통지서를 받은 점’(8.1%) 등으로 나타남.

표 4-4.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연체) 후 불편한 점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빈도	비율(%)
없음	16	66.7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점	2	8.3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전액 본인이 부담한 점	0	0
병의원을 이용한 후에 공단으로부터 독촉장 또는 환수금 통지서를 받은 점	1	4.2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5	20.8
계	24	100.0

## 2.2.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비 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률이 높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중증질환 보유자의 경우 의료이용을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급여 수준에 있어서 부족한 보장성과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함.

### ○ ‘귀댁에서는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

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비율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10.2%이었음(표 4-5 참조).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중요 이유는 ‘진료비가 부담이 되어서’(45.5%), ‘치료를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18.2%), ‘장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18.2%), ‘시간이 없어서’(9.1%), ‘식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9.1%)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6 참조).

표 4-5. 의료서비스 수혜 포기 경험 여부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11	2.8	22	10.2
없다	389	97.3	181	84.2
계	400	100.0	203	100.0

\* 무응답(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12명)은 제외함.

표 4-6.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중요 이유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진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5	45.5	8	29.6
장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2	18.2	6	22.2
시간이 없어서	1	9.1	2	7.4
치료를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2	18.2	7	25.9
식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	9.1	2	7.4
병·의원이 너무 멀어서	-	-	2	7.4
계	11	100.0	27	100.0



- ‘귀택에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응답은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다’가 30.8%, ‘의료비(약값 포함)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가 24.3%,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하기 어렵다’가 22.5%,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8.5%, ‘거리가 멀다’가 13.3%로 나타남(표 4-7 참조).

표 4-7. 보건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 범주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료비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97	24.3	32	14.9
거리가 멀다	53	13.3	19	8.8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하기 어렵다	90	22.5	5	2.3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34	8.5	56	26.0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다	123	30.8	89	41.4
기타	3	0.8	14	6.6
계	400	100.0	215	100.0

### 3.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3.1. 가입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의 가입 측면의 사각지대는 납부 예외, 국민연금 미 가입, 보험료 체납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 전업주부, 고령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적용 제외자’는 사각지대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 □ 납부 예외

- 국민연금제도는 납부 예외 조항을 두어 국민연금제도에 보험료 납부이력을 가지고 있던 가입자가 소득 중단 또는 감소를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신청에 의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음.
- 납부 예외 신청 대상 사유: ① 사업 중단·실직·휴직, ② 병역의무 수행 시, ③ 학생, ④ 교도소 수감자,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⑥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⑦ 장기간 해외체류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자, ⑧ 성직자, ⑨ 장애인이나 행위무능력자 등임.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4개 사례지역 및 현지통신원 중에서 60세 미만인 경우) 결과에 따르면, 4개 사례지역의 60세 미만 농어업인 112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6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 60세 미만 농어업인 51명 중에서는 납부 예외자(2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이었음.
- 국민연금 납부 예외의 이유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4개 사례지역 및 현지통신원 중에서 60세 미만인 경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의 주된 이유는 재해·사고(3명), 사업 중단(1명), 실직(1명) 등으로 나타남.
  - \* 제4차 한국복지패널(2009)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의 이유는 ‘생활 곤란’(75.4%), ‘실직·휴직·사업 중단’(24.6%)임.

## □ 국민연금 미 가입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4개 사례지역 및 현지통신원 중에서 60세 미만인 경우) 결과에 따르면, 4개 사례지역의 60세 미만 농어업인 112명 중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19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16.9%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 60세 미만 농어업인 51명 중에서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3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5.9%이었음.

\* 제4차 한국복지패널(2009)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국민연금 미 가입 비율은 12.8%임.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4개 사례지역 및 현지통신원 중에서 60세 미만인 경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 가입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명)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5명),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명), ‘국민연금제도를 잘 몰라서’(1명) 순으로 나타남.

\* 제4차 한국복지패널(2009)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국민연금 미 가입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76.9%), ‘가입 필요성이 없어서’(15.4%), ‘국민연금제도 불신’(7.7%) 순임.

#### □ 연금보험료 체납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4개 사례지역 및 현지통신원) 결과에 따르면, 4개 사례지역의 경우 응답 농어업인(400명)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18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응답자(215명)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5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이었음.

-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나타남.

-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

- 평균 체납 기간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33.7개월이고, 현지통신원은 44.4개월임.

### 3.2. 수급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 연금 수급 측면의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4개 사례지역 및 현지통신원) 결과에 따르면, 4개 사례지역의 경우 60세 이상 농어업인(288명)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176)이 차지하는 비율은 61.1%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60세 이상 응답자(162명)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52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32.1%이었음.

\* 한국궤립조사연구소(2003)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67.0%임.

#### □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 원으로 나타남.

\* 한국궤립조사연구소(2003)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농가의 월 평균 수급액은 11만 2,000원임.

\* 4차 한국복지패널(2009)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15만 5,775원임.

\*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2009)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16만 6,000원임.

- 본 연구의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4개 사례지역 및 현지통신원) 결과에 따

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월 평균 연금보험료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74,063원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79,758원으로 나타남. 월 연금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2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33.3%에 불과하여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다수의 농어업인들은 노후에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4. 소결

#####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자격 측면과 급여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본 연구의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54.2%,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25.0%, ‘납부시기를 놓쳐서’ 20.8% 순으로 나타남.
-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경우는 2.8%이었음.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가입 측면과 수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가입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의 가입 측면의 사각지대는 납부 예외, 국민연금 미가입, 보험료 체납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납부 예외: 4개 사례지역의 60세 미만 농어업인 112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 60세 미만 농어업인 51명 중에서는 납부 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이었음. 국민연금 납부 예외의 주된 이유는 재해·사고, 사업 중단, 실직 등이었음.
  - 국민연금 미 가입: 4개 사례지역의 60세 미만 농어업인 112명 중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9%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 60세 미만 농어업인 51명 중에서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9%이었음. 국민연금 미 가입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순으로 나타남.
  - 연금보험료 체납: 4개 사례지역의 경우 응답 농어업인(400명)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응답자(215명)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이었음.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나타남.
- 수급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 연금 수급 측면의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4개 사례지역의 경우 60세 이상 농어업인(288명)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

율은 61.1%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60세 이상 응답자(162명)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32.1%이었음.

-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제 5 장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관련 외국의 사례

## 1. 일본

### 1.1. 의료보험

- 원칙적으로 노동형태, 직종, 지역 등에 따라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됨.
  -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관장의 건강보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제조합에 의한 의료보험, 선원보험, 퇴직자의료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등이 있음(표 5-1 참조).
- 건강보험은 1922년에 시작되었으며, 각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 노동자와 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함.
  - 급여 종류로는 요양급여, 입원 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이송비, 상해·질병수당, 출산수당, 출산육아일시금·배우자출산육아일시금, 매장료, 가족요양비, 고액요양비 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은 1938년에 제정, 시행됨으로써 국민개보험이 실시되었음.



표 5-1.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제도	피보험자		보험자	급부사유
		일반	건강보험의 적용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셀러리맨·OL(민간회사의 근로자)		
의료 보험	건강보험	일반	건강보험의 적용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셀러리맨·OL(민간회사의 근로자)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조합	업무 외의 질병·부상, 출산, 사망
		법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건강보험의 적용 사업소에 임시로 사용되는 사람이나 계절적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일정 기간을 넘어 사용되는 사람은 제외)	전국건강보험협회	
	선원보험(질병부문)	선원으로서 선박 소유자에게 사용되는 사람		전국건강보험협회	
	공제조합(단기급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각 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지역보험)	건강보험·선원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 이외의 일반 주민		시(구)정촌	질병·부상, 출산, 사망
퇴직자 의료	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등 피용자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하여, 노령연금급부를 받고 있는 65세 미만 등의 사람		시(구)정촌	질병·부상
고령자 의료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75세 이상의 사람 및 65세~74세에서 일정한 장애 상태에 있는 것에 추가하여 후기고령자의 료광역연합의 인정을 받은 사람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	질병·부상

자료: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けんぽ) 홈페이지(<http://www.kyoukaikenpo.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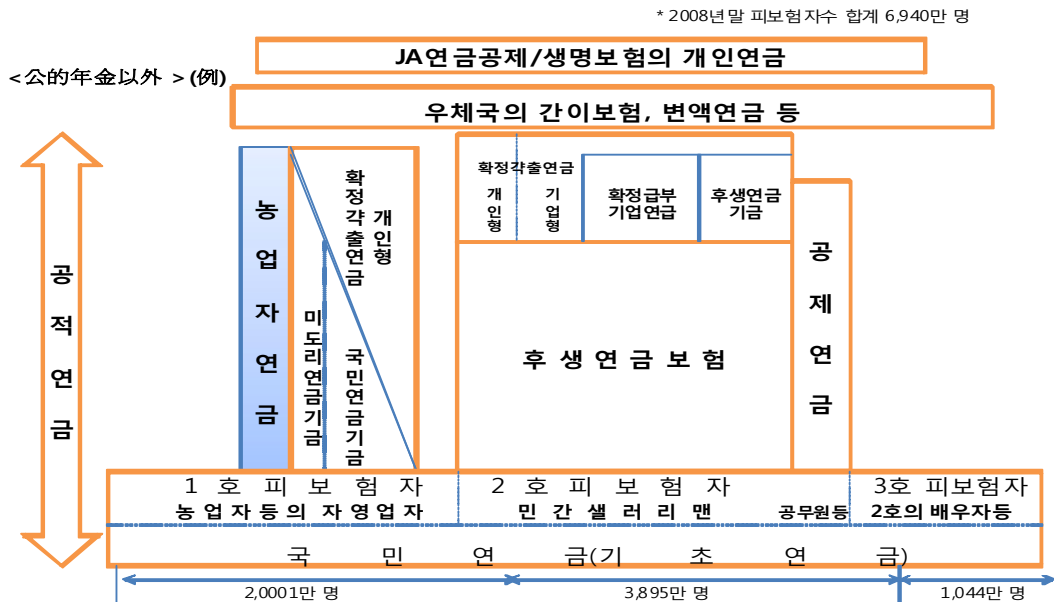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농산어촌 주민, 도시의 상공업자, 자영업자 등 소위 피용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질병, 부상, 출산 또는 사망에 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임.
- 농산어촌 주민 혹은 도시의 상공업자, 자영업자 등 피용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또는 사망에 관한 요양급여를 실시함.

- 급여의 종류로는 법정 급여(요양급여, 입원 시 식사요양비의 지급, 특정요양비의 지급, 요양비의 지급, 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특별요양비의 지급, 이송비의 지급, 고액요양비의 지급)와 임의급여(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 장제비의 지급, 상해·질병수당의 지급 등)가 있음.
- 퇴직자의료보험은 후생연금 중 피용자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하고 노령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7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인 자 및 65~74세 이상으로서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 고액 본인부담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음. 일본의 의료보험 급여율은 입원과 외래 모두 원칙적으로 70%이고 본인부담률은 30%임. 이와 더불어 고액요양비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환부를 해주는 제도임.
- 일본의 의료보험 체납자 관리는 1년 6개월 이상 체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1년 이하의 체납자는 단기피보험자증을 교부함.
  - 1년 이하 체납자들에 대한 독촉과 납부지도가 이루어진 후 체납기간 1년이 지나면 특별사정 여부를 확인하여 결손여부를 결정함. 이 때 체납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증을 반환받고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게 됨.
  - ‘자격증명서’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전액을 보험수가로 수진자가 부담하고, 의료비의 70%를 환급받기 위하여 보험자를 방문할 때 체납보험료와 상계 정산하여 체납을 해결함.

## 1.2. 연금

- 일본의 연금제도는 자영업자, 농업인, 학생, 전업주부 등을 위한 국민연금, 피용자(근로자)를 위한 후생연금(민간) 및 공제연금(공무원) 등이 있음(그림 5-1 참조).

그림 5-1. 일본의 연금 구조



-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임.
  -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등의 노령, 장애, 사망과 사고에 관한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 내용으로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사망일시금, 노령복지연금 등이 있음.
  - 국민연금은 1959년 4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복지연금(1959. 1)과 각출제연금(1961.4)이 시작되었음.

- 1985년 법 개정으로 피용자 및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하게 되어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로 발전하였음. 제도 발족 당시에 이미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무각출로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노령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주로 보험료 수입으로 조달되며,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정액으로 부과됨.
  - 노령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65세부터 지급됨. 40년 가입 시 수급하는 완전 노령기초연금의 수준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5% 수준이며 이는 대략 최저생계비에 해당됨.
- 후생연금은 근로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해서 연금과 일시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 내용으로는 노령후생연금, 노령후생연금의 특별 지급, 장애후생연금 및 장애수당, 유족후생연금 등이 있음.
  -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상시 5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체는 당연적용 대상 사업체가 되고, 1991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음.
  - 노령후생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으로서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이어야 함. 노령후생연금 급여액은 소득비례부분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됨.
- 경영이양연금은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자가 수급자격이 있음.
- 경영이양연금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경영이양을 한 사람이 원하는 시기부터 지급됨.
  - 연금액은 연금단가, 보험료 납부 완료 개월 수, 물가 슬라이드 비율을 곱

하여 계산되는데 가산형과 기본형 연금으로 구분됨. 영농후계자에게 경영승계를 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연금이 지급되어 정책의 초점이 농업후계자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 농업자연금

- 농업자의 노령에 대하여 필요한 연금 등의 급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노후 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업자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업자연금제도는 1971년 1월에 발족한 이래, 경영이양연금 등의 급부를 시행함으로써, 전업적 농업자의 노후생활의 안정과 아울러 적기의 경영이양을 통한 농업경영의 근대화화 및 농지보유의 합리화의 촉진에 기여해 왔음.
-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보험료 납부 면제자는 제외)로서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농지를 갖고 있지 않은 농업자나, 배우자와 후계자 등의 가족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음.

#### ○ 농업자연금의 특성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강한 연금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그 운용수입을 장차 지급할 연금의 원자(原資)로 적립해 두고, 이 연금 원자 금액에 대응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는 적립방식(확정각출형) 연금임.
- 보험료 금액은 자유롭게 결정함: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연금액의 목표에 맞추어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함(월액 2만 엔부터 6만 7천 엔까지의 사이에서 천 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농업경영의 상황과 노후설계에 따라 연제라도 수정할 수 있음.
- 종신연금으로 80세까지 보증됨: 연금은 생애 지급됨. 가령 가입자·수급자가 80세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다음 달부터 80세까지 수취될 수 있었던 농업자노령연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망일시금으

로 유족에게 지급됨.

- 공적연금이라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음: 지불된 보험료는 전액(연간 12만 엔~80만 4천 엔)이 사회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되며, 소득세·주민세의 절세(지불된 보험료의 15~30% 정도)로 연결됨(민간의 개인연금의 경우는 공제액의 상한은 5만 엔).
  - 농업 후계자에게는 정책지원(보험료의 국고보조)이 있음(일명 후계자적립연금): 인정농업자로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등 농업 후계자로 되는 사람에게는 국가로부터 월액 최고 1만 엔의 보험료 보조가 있음.
- 농업 후계자에 대한 보험료 보조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음.

- 60세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 예상될 것

구제도 가입자(탈퇴일시금 또는 특례탈퇴일시금을 수급한 자는 제외)는 구제도(2001년 12월말까지)의 보험료 납부 만료기간 등도 합산될 수 있음.

-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농업소득이 900만 엔 이하일 것
- 아래의 구분 1~5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람(표 5-2 참조)
- 국고보조액과 그 운용수익은 개인별로 적립되며, 65세부터 특례부가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 특례부가연금을 수급하는 데에는 농지 등의 경영계승이 필요하지만, 경영계승의 시기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음.
- 자신이 적립한 몫은 65세부터 농업자노령연금으로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부터 농업자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농업을 계속하며, 본인의 체력 등에 따라 특례부가연금의 수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음.

표 5-2. 보험료 보조 대상자와 국고보조액

구분	필요한 조건	국고보조액	
		35세 미만	35세 이상
1	인정농업자로 청색신고자	10,000엔 (5할)	6,000엔 (3할)
2	인정취업자로 청색신고자	10,000엔 (5할)	6,000엔 (3할)
3	구분1 또는 구분2의 자로서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후계자	10,000엔 (5할)	6,000엔 (3할)
4	인정농업자 또는 청색신고자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로서, 3년 이내에 양쪽을 충족할 것을 약속한 자	6,000엔 (3할)	4,000엔 (2할)
5	35세까지(25세 미만인 경우는 10년 이내)에 구분1의 자로 될 것을 약속한 후계자	6,000엔 (3할)	-

주: 보험료의 국고보조를 받는 기간의 보험료는 2만엔으로 고정되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만 엔에서 국고보조액을 차감한 금액이 됨.

#### ○ 후계자적립연금

- 65세의 농업자의 평균여명은 남성 22년(87세), 여성 27년(92세)임.
- 노후 생활자금은 현금지출로 연간 약 280만 엔 정도임. 고령농가세대(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부부 2인)의 가계비는 현금지출로 월액 약 23만 엔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액은 158만 엔 정도임. 농업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40년 가입으로 월액 약 65,700엔, 부부 합해 월액 약 131,400엔 정도임.
- 이와 같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노후의 생활비는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샐러리맨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추가(상승) 연금으로서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후생연금의 모델 사례로는 부부 2인으로 연액 약 280만 엔, 월액 약 23만 엔)을 받고 있음.

- 농업자들은 장점이 많은 농업자연금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표 5-3>에는 농업자연금제도와 여타 공적 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특성이 비교되어 있음.
- 농업자노령연금
- 경영이양이 불가능했거나 경영이양을 하지 않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이양을 한 농가보다 낮은 금액의 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함.
  - 농업자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경영이양연금의 1/2 정도임.
- 농업자연금과 여성농업인
- 농업자연금은 여성농업인의 노후를 튼튼하게 지원함.
  - 여성농업인의 노후는 「국민연금 + 농업자연금」이 기본임.
  -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월액 최고 65,700엔(부부 2인은 131,400엔)임.
  - 고령농가의 가계비(부부 2인 기준)는 월 23만 엔 정도로 봄.
  - 농업자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게 함.
  -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면, 농업자연금 보험료의 국고보조도 받을 수 있음. 인정농업자로 청색신고를 하고 있는 남편과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보험료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음(월액 최고 1만 엔).
- 최근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공헌을 연금제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연금 크레딧 적용 및 확대



표 5-3. 농업자연금제도와 여타 공적 연금제도의 비교

종류 항목	농업자연금	미도리연금	(개인형)확정각출연금
가입형태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재정방식	적립방식	적립방식	적립방식
급부방식(불입 방식)과 그 특징	확정각출(보험료 * 보험료+운용수익을 원자로 하여 연금액을 산출	확정급부(급부)	확정각출 * 각 개인의 책임으로 자산 운용(지시)을 하며,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급부액 결정
대상자	국민연금의 제 1호 피보험자 (20~59세)로 60일 이상 농 업에 종사하는 자	국민연금의 제 1호 피보험 자(20~59세)로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의 제 1호 피보험 자(20~59세)</li> <li>• 국민연금의 제 2호 피보험 자(60세 미만의 후생연금 의 피보험자로 기업연금 제도가 없어, 기업형연금 미가입자)</li> </ul>
국고에 의한 보험료 조성	있음 정책지원자에게 보험료의 일 부를 국가에서 조성, 경영계 승요건을 충족하면 연금화	없음	없음
국고에 의한 급부 조성	없음	있음 국민연금의 부가보험료에 대한 부가연금과 유족일시 금의 일부를 구가가 부담	없음
중복가입의 가부	미도리연금과도,확정각출연 금과도 중복가입할 수 없음	확정각출연금과의 중복가 입은 가능 농업자연금과의 중복가입 은 불가	미도리연금과의 중복가입은 가능 농업자연금과의 중복가입은 불가
가입연령	20~59세(농업자에 한함)	20~59세(농업자에 한함)	20~59세

표 5-3. 농업자연금제도와 여타 공적 연금제도의 비교(계속)

종류 항목	농업자연금	미도리연금	(개인형)확정각출연금
연금 등의 종류	1. 농업자노령연금(종신) 65세 지급개시(60세까지 중복 가능. 80세까지 보충) 2. 특례부가연금(종신)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60세까지 20년 이상 보험료 납부완료기간 보유 • 원칙 65세가 될 것 • 경영계승에 의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노령연금 1. 1구좌(65세 개시 종신2종류) • A형(보증기간 15년) • B형(보증기간 없음) 2. 2구좌채 이후 (종신 2종류+확정 5종류) • A형 • B형(위와 동일) • I형(65세 개시 •15년) • II형(65세 개시 •10년) • III형(60세 개시 •15년) • IV형(60세 개시 •10년) • V형(60세 개시 •5년)	노령급부금 1. 연금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한연금이나 종신연금) 2. 일시금 운영관리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사망급부의 유무	1. 농업자노령연금 있음(사망일 시금). 80세까지라면, 연금지급 개시 전후라도 사망시부터 80세까지에 지급예정인 연금의 현재가치 상당액 2. 특례부가연금 없음	1. A형, I형, II형, III형, IV형, V형 있음(유족일시금) • 연금지급 개시 전은 가입시 연령과 사망시 연령 및 사망 시까지의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른 금액 • 연금지급 개시 후는 나머지 보증기간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산(연금 원자) 상당액 2. B형 • 연금지급 개시 전은 만연의 유족일시금 • 개시 후는 없음.	있음(사망일시금) • 사망한 자에 관한 연금 자산(지분)의 금액에 기초함.

표 5-3. 농업자연금제도와 여타 공적 연금제도의 비교(계속)

종류 항목	농업자연금	미도리연금	(개인형)확정각출연금
연금개시연령	원칙 65세 (반복 지급도 있음)	65세(Ⅱ형만 60세) 부가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지급 있음.	60~70세 (가입기간에 따름) * 늦어도 70세까지에 수급 개시하지 않으면 일시금 으로 급부
불입방법	월납·전납	월납·전납·일괄	월납
사회보험료 공제 등의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연 804,000엔 한도)</li> <li>• 연금은 공적연금등 공제의 대상</li> <li>• 사망 시의 일시금은 전액 비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연 816,000엔 한도, 미도리연금+확정각출의 경우는 합계액의 상한이 816,000엔)</li> <li>• 연금은 공적연금등 공제의 대상</li> <li>• 사망 시의 일시금은 전액 비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소규모기업공제등 공제료 공제 연 816,000엔 한도, 미도리연금+확정각출의 경우는 합계액의 상한이 816,000엔)</li> <li>• 운용 시 적립금에 특별법 인세 과세(과세 동결중이기 때문에 비과세)</li> <li>• 연금은 공적연금등 공제를 적용</li> <li>• 사망일시금 간주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퇴직수당금등의 비과세 구조이용 가능)</li> </ul>
해약(탈퇴)	임의탈퇴는 언제라도 가능함. 탈퇴일시금은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	임의탈퇴는 할 수 없음. 탈퇴일시금은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	원칙, 중도탈퇴·중도인출할 수 없음(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탈퇴일시금 있음)
증액·감액 ·유형 변경 등	보험료액 변경 가능(매월) 단, 정책지원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증액은 불가	2구좌제 이후 구좌의 증감 가능 (단, 구좌증가는 연도내에 1회만)	연도내에 1회에 한해 각출액 변경 가능

자료: 獨立行政法人 農業者年金基金. 2011.4. 「農業者年金: 入門ガイド」.

○ 2010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공적 연금의 운영업무 담당)와 전국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사업 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대상)로 재편하여 운영함.

## 2. 독일

### 2.1. 질병보험

- 질병보험은 가입자 및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켜 주는 보험임.
- 독일 질병보험제도의 특징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제한된 소득재분배장치를 갖추고, 조합분권적인 조직형태 및 조합자치행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임.
- 질병보험은 당연적용 대상자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적 질병보험에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연방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소득의 ‘강제가입 상한선’ 미만의 가입자는 질병보험 가입이 의무임.
  - 공적 질병보험에 당연 적용되지 않거나, 임의가입 권리가 없는 자는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하여 공적 질병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2009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질병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이 법적 강제사항으로 되었음.

- 보험료는 2009년부터 15.5%의 전국 단일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용주가 7.3%, 근로자가 8.2%를 부담함.
  -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증액되는 종류가 확대됨.
  - 농업노동자가 아닌 농업인과 그 가족을 위한 농업인사회보험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한 20개의 보험료 범주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 농업인 사회보험의 재원 중 일반 조세의 비율은 전체 재원의 55% 수준임.
  
- 저소득층 의료보장
  -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가 아닌 질병(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보호를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수당 지급을 통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 저소득층이 일반 가입자와 차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함.
  - 공공부조 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을 질병(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낙인을 제거하였음.
  
-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험료 납부 지원
  -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가 ‘사회법전 II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 및 ‘사회법전 XIII 공공부조’의 수급자인 경우 민간 의료보험사는 이들의 보험료를 50% 감면함.
  -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가 감면된 50%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자는 구직센터, 공공부조 수급자는 공공부조 담당 사회관청으로부터 보험료 납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음.
  
- 질병보험에 있어서의 본인부담의 면제·경감·상한
  - 과중부담조항을 통해 본인부담에 상한을 두고 사회조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본인부담의 면제 및 경감조치를 함.
  - 과중부담조항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을 두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함. 본인부담 상한은 소득의 2%임.

- 사회조항을 충족하는 자(연방사회부조법과 연방취학촉진법 등에서 정하는 해당조항을 충족하는 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됨. 저소득계층, 실업급여 수령자, 사회부조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음.
- 피보험자는 다른 사회보험 운영주체(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발보험)가 급여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질병보험조합에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상병수당은 투병기간에 가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급됨.
- 병원 선택은 자유로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 대신에 다른 병원을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2011년부터 추가보험료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로 마련되는 ‘사회조정금’제도를 도입하고 각 보험조합은 추가보험료를 피보험자 소득의 2%까지 자유롭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조합간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비교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사회조정금은 질병보험재정의 새로운 설계방안으로 추가보험료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세금으로 지원되며 건강펀드가 징수함.
  - 건강펀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보험료를 중앙에서 모으고 분배하는 곳으로 조세보조금도 건강펀드로 보내지며 사회조정금은 빈곤층과 부유층간의 소득재분배에 기여함.

## 2.2. 연금보험

-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노동자·직원·광부연금제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2005년에 ‘독일연금보험’으로 통합되었음.
- 독일 노인층의 소득원천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임.
- 독일연금보험 당연적용 대상자
  - 근로자: 근로소득을 받고 고용된 자, 직업훈련중인 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종교단체 종사자
  - 자영자: 법률에 의한 당연적용자, 신청에 의한 당연적용자
  - 수공업자: 수공업자 명부에 등록된 자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 기타: 아동 양육자, 병역의무 종사자, 간병인
- 부모, 군인, 학생에 대한 연금 크레딧 혜택
  - 자녀양육, 군복무, 학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3년, 군복무기간 전체, 17세 이후의 학업기간이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됨.
- 임의가입대상자
  - 당연적용(가입)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함.
- 독일은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경기 침체, 인구구조의 고령화, EU 통화의 통합 등으로 연금재정이 압박되어 여러 차례 지출억제정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음.

- 2004년도 독일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이 연금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되었고 일정 급여 수준의 보장은 이차적 목표가 되고 있음.
  - 연금보험료율의 한계선을 [19.1% → 20%(2020년) → 22%(2030년)]로 설정하였음.
  -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 소득 보장 제도를 마련하였음.
  - 취약 계층을 위한 크레딧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출산, 육아, 실업 등에 대한 ‘기여인정제도’를 만들었음.
  
- 2007년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되었음.
  
-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선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배 수준이고, 하한선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7 수준임.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조제도
  - 공적연금 개혁으로 연금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에 도입함.
  - 특별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은 일반 공공부조보다 15% 높게 설정함.
  - 부양의무자의 연간 수입상한을 10만 유로로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연금수령자수와 연금보험료 납부자수간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지속성지수(sustainability factor)제도를 도입하여 인구고령화 및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연금지급액이 축소되도록 하고 있음.
  
- 농민노령부조법은 1957년에 처음 제정되어 농업경영자와 그 가족 종사자에



게 적용되었음. 1994년에 '농민사회보험개혁법'이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농민노령부조법은 이 법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업경영자는 농민노령금고에서 정한 최소 규모 이상의 농업, 임업, 채소·과수재배업,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종사원은 25세 이상 3촌 이내의 친척이 포함됨.
  - 농민사회보험개혁법에 의하여 배우자는 가족 종사원이 아니라 별도의 농업경영자로서 가입하도록 하였고, 농민에 대한 연금급여 산정 방식을 정액방식에서 다른 공적 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농민노령부조의 급여에는 재활급여,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농지이양연금 등이 있는데, 농민노령부조의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야 함.
- 농업경영자의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65세 이상이고 농업 경영권을 9년 이상 이양했으며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임.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농업 경영권을 9년 이상 이양하고, 60세 또는 생계활동 불능 전까지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임.
- 공적 연금제도 외에 국가에서 시행 및 재정 부담하는 부양제도로는 공무원 부양제도와 군인부양제도가 있음.
- 독일은 공적연금 급여지출의 약 25%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나, 보험료 납부단계에서는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음.
- 사적 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함.
- 리스터(Riester) 연금제도
- 노후보장에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됨.

- 100%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사적 연금으로 일부 대체하기 위한 사적 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임.
  - 리스터 보조금은 공적 연금 급여의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지원대상은 공적 연금 당연 가입자와 이에 준하는 자들로 제한됨.
  - 사적 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는 대신 국가가 주도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전하려고 노력함.
- 19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 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 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주류를 이룸.
- 공적 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조제도(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의 확충이 이루어졌음.
- 독일은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 경기 침체, 인구구조의 고령화, EU통화의 통합 등으로 연금재정이 압박되어 여러 차례 지출억제정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음.
- 독일의 공적 연금 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급여액 삭감, 급여수급권 강화(장애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남녀 모두 65세로 향후 67세로 연장), 사적 연금 가입 권장(세제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3. 정책적 시사점

- 건강(의료)보험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민간 의료보험사는 이들의 보험료를 50% 감면함.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가 감면된 50%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직자는 구직센터, 공공부조 수급자는 공공부조 담당 사회관청으로부터 보험료 납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음. 그리고 과중부담조항을 통해 본인부담에 상한(소득의 2%)을 두고 사회조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본인부담의 면제 및 경감조치를 함. 그리고 저소득 계층, 실업급여 수령자, 사회부조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음.
  - 일본은 국민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예외적이고 잔여적인 형태의 의료부조를 실시함.
  
-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인 자 및 65~74세 이상으로서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으로부터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임.
  - 독일의 경우, 고령자를 포함하여 의료보험료의 지불능력이 결여되거나 지불부담으로 인해 의료의 이용이 제약받게 될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든지 대납하든지 하는 특별 대책을 강구함.
  
- 일본과 독일의 경우 공적 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지가 오래되어 연금보험이 고령 농어업인들의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음. 즉, 이들 국가에서는 고령 농어업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농어업인들이 19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현재 기준 16년) 완전노령연금(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20년이 되어야 함)을 받을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농업인의 공적 연금은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과 농업자연금제도의 이중구조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리고 연금제도를 영농후계자 확보나 농지 이양 등 농업정책의 효과 증대와 연계하고 있음.
  - 영농후계자에게 경영승계를 할 경우에는 특례부가연금이 지급되어 영농후계자를 확보하게 됨.
- 일본과 독일은 농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일본은 농업자연금과 경영이양연금제도, 독일은 농업경영이양연금과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가 있음.
- 농업경영자의 배우자도 별도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1985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피용자 및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하게 하여 국민연금을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로 발전시켰음.
  - 독일은 1995년부터 「농민사회보험개혁법」에 의거하여 배우자는 가족 종사원이 아니라 별도의 농업경영자로서 가입하도록 하였음.
-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연금제도에서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자녀양육기간 등과 같은 저소득 및 무소득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딧)하고 이를 국고로 조달함으로써 상당한 소득재분배를 이루고 있음.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 연금 지급액의 축소, 공적 연금의 부분

민영화, 사적 연금을 활용한 공적 연금의 보완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독일의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은 공적 연금 급여수준 인하에 따른 연금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연금임.
  - 독일은 리스터 연금을 계기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적 연금 단일보장에서 다층보장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사적 연금이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금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 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를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제 6 장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각지대 해소 과정과 더불어 발전해 왔음. 그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잘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더라도 이 제도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그 사회보장제도는 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은 자격 측면과 급여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고,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은 가입 측면과 수급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음.

#### 1.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 1.1.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개선방안

- 농어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개요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 본인이 보험료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겨울철 영농교육 및 각종 농어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되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농어촌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내역을 알리도록 함.
  - 농어촌 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 납부고지서의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에서 농어촌경감과 농어업인 추가경감 부분을 좀 더 부각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음(그림 6-1 및 그림 6-2 참조).

그림 6-1.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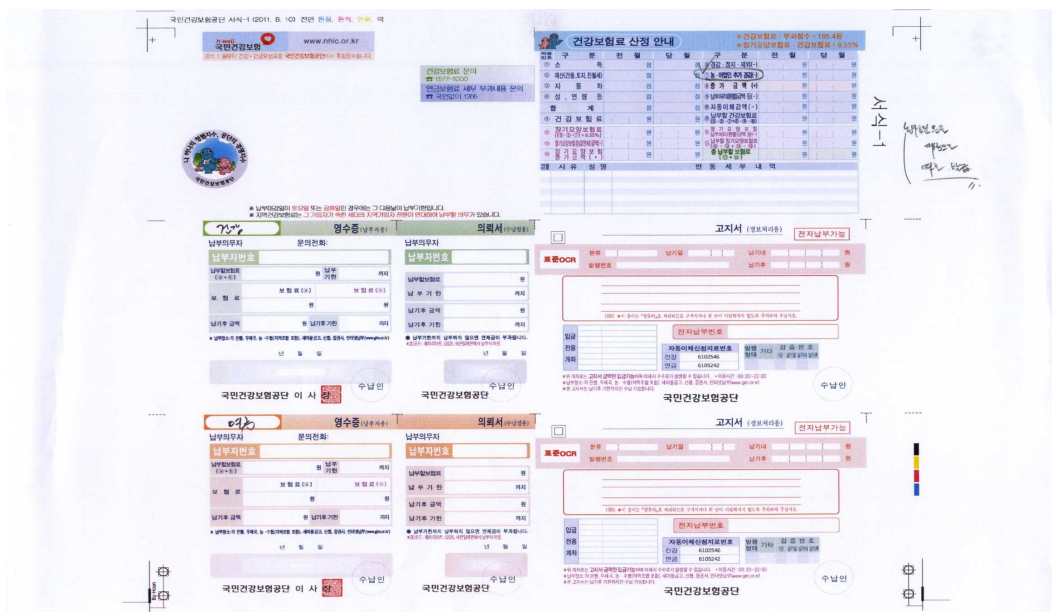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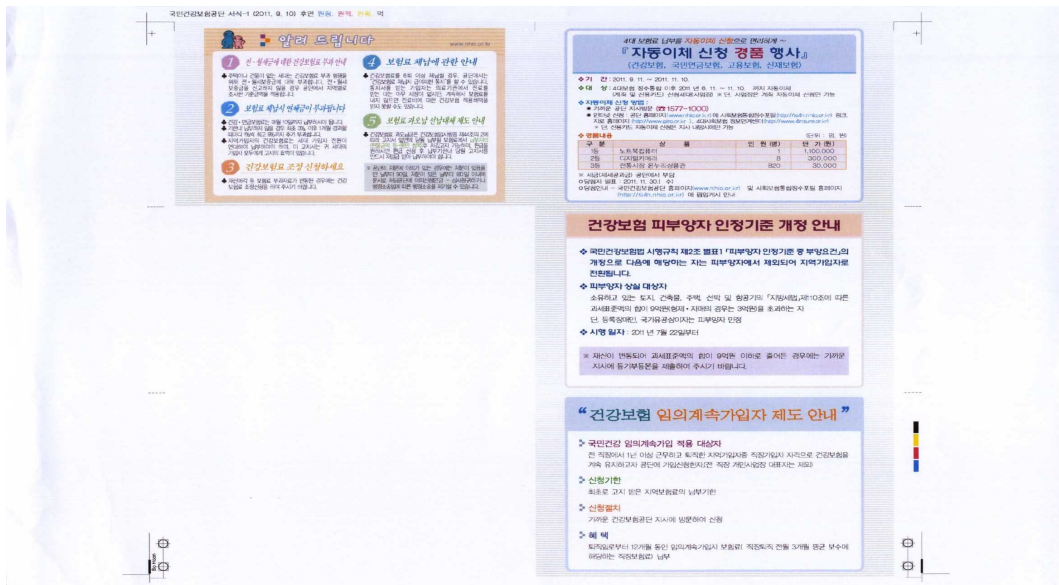


그림 6-2. 건강보험료 산정 안내(뒷면)



- 4대 사회보험 통합 납부고지서, 별도 국민건강보험 납부고지서의 뒷면, 별지 안내서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1.2.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개선방안

### ○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 현재 기초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매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지원협약 사업’ 확대: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공단과 지원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해당 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213개 지자체 및 280여 개 기관(개인)이 19만 5,000세대에 116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음. 특히, 전국의 213개 지방자치단체(예를 들면, 옥천군, 홍성군 등)가 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 등임.



## ○ 예방의료의 강화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
- 농어업인 중 특수 환경(축산, 시설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 축산, 시설농업 등은 유기먼지 노출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비염, 결막염, 천식, 기관지염 등) 유발 가능성이 높음.
- 국민건강보험을 일반건강진단제도와 연계하여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운영하되 검진비용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함. 농어업인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때 농어업 관련 직업성 질환에 대하여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함.
- 정부는 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함.

## &lt;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gt;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유해인자(석면, 벤젠 등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함. 즉,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함.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 177종(부록 1 참조): 화학적 인자 163종(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 13종, 금속가공유), 분진 6종(곡물·광물성·면·나무·용접·유리섬유 분진), 물리적 인자 8종(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니크로파 및 라디오파)

## 2.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 2.1. 가입 측면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 노후생활에서의 중요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토록 함.
  - 겨울철 영농교육 및 각종 농어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
  -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되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 개선 노력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내역을 알리도록 함.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예: 총 국민연금보험료(A)  
 농어업인 지원액(B)  
 본인부담액(C) = A - B
  - 4대 사회보험 통합 납부고지서, 별도 국민연금 납부고지서 뒷면, 별지 안내서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크레딧’은 육아기간은 최대 50개월, 군복무는 최대 6개월임.

- 병역의무기간, 출산·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인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병역의무기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음.
- 향후,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 크레딧’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 수급 측면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 ○ 농어업인 노후 연금 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함. 국민연금은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농어업인들도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들은 대다수가 마지못해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자신의 실제 소득수준보다 낮게 내면 당장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노후에 그만큼 낮은 연금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함.
- 독일과 일본은 여성농어업인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여성농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의 소득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위 지원에서 농어업인 부부 개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보험에도 일정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의 최고 월 수급액(2011년 기준 단독가구 91,200

원, 노인 부부가구 145,900원)을 인상하여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노후소득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함.

#### ○ 농지연금의 개선

-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함(중장기적으로 추진).
-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정 규모(예를 들면,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일반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함.
-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제 7 장

###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 연구 목적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②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며, ③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각종 통계 자료,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농어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대상 우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담당자 면접조사 등을 수행하였음.

#####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건강보험(건강보장) 가입에 있어서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50.2%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38.2%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라고 답했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는 응답은 6.0%, ‘의료급여 1종 및 2종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4.8%이었음. 즉, 응답자의 94.4%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8%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기타)의 비율은 0.8%로 나타났음.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을 선행 연구(조사)와 비교하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가입률은 9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4차 한국복지패널(96.2%),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98.3%) 및 한국의료패널(93.5%)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153명)의 보험료(월)는 ‘2만 원~4만 원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보험료는 7만 3,575원이었음.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3/4 정도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에 대하여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80.3%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함. 현지통신원은 35.0%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5.7%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지통신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접하거나 관심을 가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 60세 미만 응답자(112명)만 따로 분석하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의 약 60%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응답자의 약 85%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월 평균 연금보험료는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74,063원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79,758원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연금 수급자’(36.7%), ‘적용 제외자’(24.5%), ‘미 가입자’(28.5%), ‘납부 예외자’(3.8%), ‘보험료 체납자’(5.6%) 등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연금 수급자’(80.4%), ‘적용 제외자’(9.4%), ‘미 가입자’(4.3%), ‘보험료 체납자’(3.6%), ‘납부 예외자’(1.4%) 등이었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혜 실태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81명 대상)은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37.0%,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13.6%, ‘잘 모르겠다’ 49.4%로 나타났음.
-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못했다’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으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아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 가입을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가에서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3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 정도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이 가입한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공무원연금’ 7호임.
- 60세 이상 응답 농어업인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38.9%인데 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67.9%로 나타남.
-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 원으로 나타남.
- 농어가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으로는 4개 사례지역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4호, ‘사학연금’ 2호, ‘군인연금’ 2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2호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3호, ‘사학연금’ 2호, ‘별정직 우체국연금’ 1호이었음.

####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본 연구의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54.2%,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25.0%, ‘납부시기를 놓쳐서’ 20.8% 순으로 나타남.
-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경우는 2.8%이었음.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 ○ 가입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의 가입 측면의 사각지대는 납부 예외, 국민연금 미가입, 보험료 체납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납부 예외: 4개 사례지역의 60세 미만 농어업인 112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 60세 미만 농어업인 51명 중에서는 납부 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이었음. 국민연금 납부 예외의 주된 이유는 재해·사고, 사업 중단, 실직 등이었음.
- 국민연금 미 가입: 4개 사례지역의 60세 미만 농어업인 112명 중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9%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 60세 미만 농어업인 51명 중에서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9%이었음. 국민연금 미 가입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순으로 나타남.
- 연금보험료 체납: 4개 사례지역의 경우 응답 농어업인(400명)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응답자(215명)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이었음.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나타남.

### ○ 수급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 연금 수급 측면의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4개 사례지역의 경우 60세 이상 농어업인(288명)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61.1%이고, 현지통신원의 경우는 60세 이상 응답자(162명)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32.1%이었음.
-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 원으로 나타남.

#### □ 외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건강(의료)보험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민간 의료보험사는 이들의 보험료를 50% 감면함.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가 감면된 50%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직자는 구직센터, 공공부조 수급자는 공공부조 담당 사회관청으로부터 보험료 납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음. 일본은 국민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예외적이고 잔여적인 형태의 의료부조를 실시함.
-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인 자 및 65~74세 이상으로서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으로부터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임. 독일의 경우, 고령자를 포함하여 의료보험료의 지불능력이 결여되거나 지불부담으로 인해 의료의 이용이 제약받게 될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한다든지 대납하든지 하는 특별 대책을 강구함.

- 일본과 독일의 경우 공적 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지가 오래되어 연금보험이 고령 농어업인들의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음. 즉, 이들 국가에서는 노령 농어업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농어업인들이 199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현재 기준 16년) 완전노령연금(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20년이 되어야 함)을 받을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농업인의 공적 연금은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과 농업자연금제도의 이중구조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리고 연금제도를 영농후계자 확보나 농지 이양 등 농업정책의 효과 증대와 연계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은 농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일본은 농업자연금과 경영이양연금제도, 독일은 농업경영이양연금과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가 있음.
- 농업경영자의 배우자도 별도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1985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피용자 및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하게 하여 국민연금을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로 발전시켰음. 독일은 1995년부터 「농민사회보험개혁법」에 의거하여 배우자는 가족 종사원이 아니라 별도의 농업경영자로서 가입하도록 하였음.
-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연금제도에서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자녀양육기간 등과 같은 저소득 및 무소득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딧)하고 이를 국고로 조달함으로써 상당한 소득재분배 이루고 있음.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 연금 지급액의 축소, 공적 연금의 부분 민영화, 사적 연금을 활용한 공적 연금의 보완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독일의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은 공적 연금 급여수준 인하에 따른 연금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연금임. 독일은 리스터 연금을 계기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적 연금 단일보장에서 다층보장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공적 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를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 자격 측면의 개선과제
  - 농어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개요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① 겨울철 영농교육 및 각종 농어업인 교육 기회를 활용,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되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양식의 변경: 농어촌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급여 측면의 개선과제
  -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현재 기초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매칭
  - 예방의료의 강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준하는 농어업인 특수건

강진단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마련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 ○ 가입 측면의 개선과제

-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양식의 변경: 농어촌주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안 모색
-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병역의무, 출산, 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인정제도를 강화,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확대를 검토

### ○ 수급 측면의 개선과제

- 농어업인 노후 연금 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①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 ②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 ③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보험에도 일정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농지연금의 개선: ①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함. ②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③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자식

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향은 농지연금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 결론

-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4%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8%는 의료급여 대상으로 나타나 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기타)의 비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격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6.3%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경험이 있었음.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54.2%,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25.0%, ‘납부시기를 놓쳐서’ 20.8% 순이었음.
- 급여 측면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경우는 2.8%이었음.
- 가입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납부 예외, 국민연금 미 가입, 보험료 체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60세 미만 농어업인 중에서 납부 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5.4%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3.9%이었음. 국민연금 납부 예외의 주된 이유는 재해·사고, 사업 중단, 실직 등이었음.
- 60세 미만 농어업인 중에서 국민연금 미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16.9%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5.9%이었음. 국민연금 미 가입의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순이었음.
-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의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4.5%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3%이었음.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었음.
- 수급 측면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60세 이상 농어업인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4개 사례지역은 61.1%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32.1%이었음.
- 농어업인의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은 16만 2천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은 20만 1천원에 불과하여 연금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음. 이것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임.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으로는 자격 측면에서는 ① 농어업

인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②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양식의 변경을 제시하였고, 급여 측면에서는 ①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② 예방 의료의 강화(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체도의 도입)를 제시하였음.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으로는 가입 측면에서는 ①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②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양식의 변경, ③ 가입인정제도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수급 측면에서는 ① 농어업인 노후 연금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② 농지연금의 개선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조사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해서 조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수가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400명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한국복지패널, 한국노후보장패널,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였음.
- 현재 전체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수혜 실태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농식품부,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연구의 기본 설계는 횡단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부록 1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실태 조사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어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응답자 인적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	전화	
가구주 성명			휴대폰	
응답자 주소	시·군		읍·면	리
면접조사원		면접일시	2011년	월 일

※ 응답자 정보는 설문조사 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전산입력 되지 않습니다.

<b>A</b>	<b>경제 활동</b>
----------	--------------

A1. 귀댁의 농어가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전업농어가 (농어업 수입뿐이다)
- 2) 1종 겸업 농어가 (농어업 수입이 농어업 이외의 수입보다 더 많다)
- 3) 2종 겸업 농어가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농어업 수입보다 더 많다)

A2. 귀하는 귀댁의 농사(어업)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1) 거의 모든 농사(어업)일을 내가 도맡아 한다.
- 2) 다른 가족원과 비슷한 정도로 같이 나누어 한다.
- 3) 다른 가족원이 주로 많이 하고, 나는 조금만 한다.
- 4) 다른 가족원이 거의 모두 하고, 나는 일손이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
- 5) 나는 농사(어업)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A3. 작년(2010년)에 귀댁에서 농어업을 통해 번 순수입(생산액에서 경영비를 뺀 것)은 얼마나 됩니까?



<b>B</b>	<b>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b>
----------	---------------------

B1. 귀하의 건강보험(건강보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 → **(B1-1로)**
-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자녀 등 가족 앞으로 되어 있음)  
→ **(B2로)**
-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자녀 등 가족 앞으로 되어 있음)  
→ **(B2로)**
- 4) 의료급여 1종(의료비 완전 면제) 대상이다. → **(B3으로)**
- 5) 의료급여 2종(의료비 일부 부담) 대상이다. → **(B3으로)**
- 6)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대상이다. → **(B3으로)**
- 7)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 **(B3으로)**
- 8) 기타(무엇: \_\_\_\_\_ )

B1-1. **(B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월  원

B1-2. **(B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귀택의 경제 사정을고려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1)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2)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부담이 된다.
- 5) 매우 부담이 된다.

B2. 귀택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B2-1로)**
- 2) 없다. → **(B3으로)**

B2-1. (B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적이 있다면, 최고 몇 개월 동안 체납(연체)하셨습니다?

 개월

B2-2. (B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납부시기를 놓쳐서
- 2)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 3) 장기간 출타했기 때문에(여행, 질병 등의 사정으로)
- 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5)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데 불만이 있어서
- 6)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 7)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할 일이 없어서
- 8) 이웃과 비교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 9) 가족문제(별거, 이혼 등)로 인해서
- 10) 별다른 이유는 없음.
- 11) 기타(무엇: )

B2-3. (B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하였을 때 귀하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 1) 없음
- 2)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점
- 3)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전액 본인이 부담한 점
- 4) 병의원을 이용한 후에 공단으로부터 독촉장 또는 환수금 통지서를 받은 점
- 5)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6) 기타(무엇: )

B3. 현재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십니까?

- 1)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2)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른다.
- 3) 전혀 모른다.



B6. 귀하께서 국민건강보험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b>C</b>	<b>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b>
----------	---------------------

C1. 귀댁에서는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C1-1로)**

2) 없다. → **(C2로)**

C1-1. **(C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였습니까?

- 1) 진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 2) 장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 3) 시간이 없어서
- 4) 치료를 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 5) 식구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 6) 병·의원이 너무 멀어서
- 7) 기타(무엇: \_\_\_\_\_ )

C2. 귀댁에는 주기적으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C3. 귀댁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병·의원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하십니까?

- 1) 전혀 이용하지 않음
- 2) 1~ 2회
- 3) 3~ 4회
- 4) 5~ 6회
- 5) 7회 이상

C4. 귀택에서는 약값과 병의원 진료비 등과 같은 의료비로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월  만 원

C5. 귀택에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1) 의료비(약값 포함)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2) 거리가 멀다.
- 3)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하기 어렵다.
- 4)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 5)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다.
- 6) 기타(무엇: )

<b>D</b>	<b>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b>
----------	---------------------

D1. 귀택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까?

- 1)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다. → 월  원
- 2) 내지 않고 있다. → **(D2로)**

D1-1. **(D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귀택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1)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2)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부담이 된다.
- 5) 매우 부담이 된다.



D1-2. **(D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정부에서는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이외 소득보다 많은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댁에서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1)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 2)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 **(D1-3으로)**
- 3) 잘 모르겠다.

D1-3. **(D1-2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귀댁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못했다.
- 2)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으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아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 3)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고,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이외의 소득보다 많아서 신청자격도 되었으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 4) 기타(무엇: \_\_\_\_\_ )

D2. **(D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 수급자) → **(D2-1로)**
- 2) 전업주부, 고령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적용 제외자) → **(D2-3으로)**
- 3)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미가입자) → **(D2-4로)**
- 4) 사정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았다. (납부예외자) → **(D2-5로)**
- 5)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 → **(D2-6으로)**
- 6) 기타(무엇: \_\_\_\_\_ )

D2-1. **(D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월  만 원

D2-2. **(D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총 몇 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결과입니까?

총  년

D2-3. **(D2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적용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어서
-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 3) 퇴직연금 수급자여서
- 4) 고령(60세 이상)이기 때문에
- 5)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여서
- 6) 기타(무엇: \_\_\_\_\_ )

D2-4. **(D2에서 ③에 응답한 경우)** 귀댁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 3) 국민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 4)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5) 기타(무엇: \_\_\_\_\_ )

D2-5. **(D2에서 ④에 응답한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납부 유예를 받아서 납부예외자가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실직
- 2) 휴직
- 3) 사업 중단
- 4) 재해, 사고
- 5) 기타(무엇: \_\_\_\_\_ )

D2-6. **(D2에서 ⑤에 응답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지만 현재 보험료를 체납(연체)하고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2) 국민연금제도를 믿을 수 없어서
- 3)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 4) 은행,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 주변에 없어서
- 5) 기타(무엇: )

D2-7. (D2에서 ⑤에 응답한 경우) 귀택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총 몇 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총  개월

D3. 귀택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 1) 있다.    ➔ 월  원
- 2) 없다.

※ **임의가입제도:**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D4. 귀택(동거가족 기준)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1명 이상 가입했을 경우 가입여부에 √표 하시고, 월 보험료는 합계를 원 단위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원)	별정직 우체국연금 등	개인연금 (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 등)
가입 여부	1) 가입	1) 가입	1) 가입	1) 가입	1) 가입
	2) 미가입	2) 미가입	2) 미가입	2) 미가입	2) 미가입
월 보험료	월 (     )원	월 (     )원	월 (     )원	월 (     )원	월 (     )원

D5. 귀택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D5-1로)                      2) 아니다 → (D6으로)

D5-1. (D5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외 공적 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급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구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등	개인연금 (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 등)
월 연금액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D6. 귀하께서 국민연금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b>E</b>	<b>노후생활 준비</b>
----------	----------------

E1 - E2. 귀하가 생각하시는 월 평균 노후생활비는 얼마입니까?

	E1. 최소수준	E2. 적정수준
개인기준 (월)	월 평균( )만원	월 평균( )만원
부부기준 (월)	월 평균( )만원	월 평균( )만원

E3.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언제부터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 1)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 2)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 3)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 4)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E4. 현재 귀댁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1) 저축       2) 보험       3) 농지 매입 또는 임대
- 4)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5) 개인연금 (은행, 보험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       6) 각종 계(계모임)
- 7) 주택 구입       8) 주식, 증권 구입       9) 계속 일(농사)을 함
- 10) 주택연금       11) 농지연금       12) 기타(무엇:      )
- 13) 아무 대책도 없음

E5. 현재 귀댁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으로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가 충분하다고 예상하십니까?

- 1) 충분할 것이다.
- 2)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4) 매우 부족할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E6. 노후생활비는 누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 2)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 3)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4) 기타(어떻게:      )

E7. 귀하는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농사(어업)일을 언제쯤 그만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60세 미만                                      2) 60~64세                                      3) 65~69세
- 4) 70~74세                                      5) 75세 이상
- 6)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어업)일을 계속할 것이다.

**F      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

F1.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F2. 현재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명

F3. 현재 귀댁의 가구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독신가구                                              2) 1세대 가구(부부)
- 3) 2세대 가구(부부+자녀)                                      4) 편부모+자녀
- 5)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6) 조부모+손자녀
- 7) 기타(무엇:                                              )

F4.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1) 초(국)졸 이하                                              2) 중졸
- 3) 고졸                                              4) 전문대졸(예정)
- 5) 4년제 대학졸(예정)                                              6) 대학원 재학(수료) 이상

F5. 귀하의 나이(연세)는 몇 세입니까?                                              만  세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표

<b>KREI</b> <b>한국농촌경제연구원</b>	<b>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실태 조사</b>	<b>통신원          번호</b>				
---------------------------------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어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10월 7일**까지 회송하여 주시고, 설문지를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응답자 인적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	전화
가구주 성명			휴대폰
응답자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 응답자 정보는 설문조사 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전산입력 되지 않습니다.

<b>A</b>	<b>경제 활동</b>
----------	--------------

A1. 귀댁의 농어가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전업농어가 (농어업 수입뿐이다)
- 2) 1종 겸업 농어가 (농어업 수입이 농어업 이외의 수입보다 더 많다)
- 3) 2종 겸업 농어가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농어업 수입보다 더 많다)

A2. 귀하는 귀댁의 농사(어업)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1) 거의 모든 농사(어업)일을 내가 도맡아 한다.
- 2) 다른 가족원과 비슷한 정도로 같이 나누어 한다.
- 3) 다른 가족원이 주로 많이 하고, 나는 조금만 한다.
- 4) 다른 가족원이 거의 모두 하고, 나는 일손이 바쁠 때만 가끔 돕는다.
- 5) 나는 농사(어업)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A3. 작년(2010년)에 귀댁에서 농어업을 통해 번 순수입(생산액에서 경영비를 뺀 것)은 얼마나 됩니까?

- |                          |                          |
|--------------------------|--------------------------|
| 1) 500만 원 미만             | 2)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
| 3)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 | 4)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 |
| 5) 3,000만 원 ~4,000만 원 미만 | 6) 4,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
| 7) 5,000만 원 이상           |                          |





-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자녀 등 가족 앞으로 되어 있음)  
→ (B2로)
- 4) 의료급여 1종(의료비 완전 면제) 대상이다. → (B3으로)
- 5) 의료급여 2종(의료비 일부 부담) 대상이다. → (B3으로)
- 6)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대상이다. → (B3으로)
- 7)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 (B3으로)
- 8) 기타(무엇: )

B1-1. (B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월  원

B1-2. (B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귀댁의 경제 사정을고려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1)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2)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부담이 된다.
- 5) 매우 부담이 된다.

B2. 귀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B2-1로)
- 2) 없다. → (B3으로)

B2-1. (B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적이 있다면, 최고 몇 개월 동안 체납(연체)하셨습니다?

개월

B2-2. (B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무엇입니까?

- 1) 납부시기를 놓쳐서
- 2)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 3) 장기간 출타했기 때문에 (여행, 질병 등의 사정으로)
- 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5)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데 불만이 있어서
- 6)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 7)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할 일이 없어서
- 8) 이웃과 비교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 9) 가족문제 (별거, 이혼 등)로 인해서
- 10) 별다른 이유는 없음.
- 11) 기타 (무엇: )

B2-3. **(B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연체)하였을 때 귀하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 1) 없음
- 2)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점
- 3)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전액 본인이 부담한 점
- 4) 병의원을 이용한 후에 공단으로부터 독촉장 또는 환수금 통지서를 받은 점
- 5)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6) 기타 (무엇: )

B3. 현재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십니까?

- 1)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2)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른다.
- 3) 전혀 모른다.

B4. 귀댁은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 관련 보험(예를 들면, 질병보험, 생명보험, 암보험등)에 가입하십니까?

- 1) 가입하였다. → **(B4-1로)**
- 2) 가입하지 않았다. → **(B6으로)**

B4-1. **(B4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건강 관련 보험에 가입한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b>C</b>	<b>보건의료서비스 이용</b>
----------	-------------------

C1. 귀댁에서는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C1-1로)

2) 없다. → (C2로)

C1-1. (C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였습니까?

1) 진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2) 장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3) 시간이 없어서

4) 치료를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5) 식구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6) 병·의원이 너무 멀어서

7) 기타(무엇: \_\_\_\_\_ )

C2. 귀댁에는 주기적으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C3. 귀댁에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병·의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하십니까?

1) 전혀 이용하지 않음

2) 1~ 2회

3) 3~ 4회

4) 5~ 6회

5) 7회 이상

C4. 귀댁에서는 약값과 병의원 진료비 등과 같은 의료비로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월  만 원

C5. 귀택에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1) 의료비(약값 포함)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2) 거리가 멀다.
- 3)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하기 어렵다.
- 4)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 5)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다.
- 6) 기타(무엇: )

<b>D</b>	<b>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b>
----------	---------------------

D1. 귀택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까?

- 1)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월  원 내고 있다. →
- 2) 내지 않고 있다. → **(D2로)**

D1-1. **(D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귀택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1)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2)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부담이 된다.
- 5) 매우 부담이 된다.

D1-2. **(D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정부에서는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이외 소득보다 많은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택에서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1)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 2)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 **(D1-3으로)**
- 3) 잘 모르겠다.

D1-3. **(D1-2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귀댁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못했다.
- 2)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으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농어업 소득보다 많아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 3)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았고,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이외의 소득보다 많아서 신청자격도 되었으나,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 4) 기타(무엇: )

D2. **(D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 수급자) → **(D2-1로)**
- 2) 전업주부, 고령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적용 제외자) → **(D2-3으로)**
- 3)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미가입자) → **(D2-4로)**
- 4) 사정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았다. (납부예외자) → **(D2-5로)**
- 5)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 → **(D2-6으로)**
- 6) 기타(무엇: )

D2-1. **(D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월  만 원

D2-2. **(D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총 몇 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결과입니까?

총  년

D2-3. **(D2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적용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어서
-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 3) 퇴직연금 수급자여서
- 4) 고령(60세 이상)이기 때문에
- 5)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여서
- 6) 기타(무엇: )

D2-4. **(D2에서 ③에 응답한 경우)** 귀댁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 3) 국민연금제도를 잘 몰라서
- 4)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5) 기타(무엇: )

D2-5. **(D2에서 ④에 응답한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납부 유예를 받아서 납부예외자가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실직
- 2) 휴직
- 3) 사업 중단
- 4) 재해, 사고
- 5) 기타(무엇: )

D2-6. **(D2에서 ⑤에 응답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지만 현재 보험료를 체납(연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2) 국민연금제도를 믿을 수 없어서
- 3)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 4) 은행, 농협 등의 금융기관이 주변에 없어서
- 5) 기타(무엇: )



D2-7. (D2에서 ⑤에 응답한 경우) 귀댁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총 몇 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총  개월

D3. 귀댁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 월  원

2) 없다.

※ **임의가입제도**: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D4. 귀댁(동거가족 기준)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1명 이상 가입했을 경우 가입여부에 √표 하시고, 월 보험료는 합계를 원 단위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원)	별정직 우체국연금 등	개인연금 (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 등)
가입 여부	1) 가입	1) 가입	1) 가입	1) 가입	1) 가입
	2) 미가입	2) 미가입	2) 미가입	2) 미가입	2) 미가입
월 보험료	월 ( )원	월 ( )원	월 ( )원	월 ( )원	월 ( )원

D5. 귀댁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1) 그렇다 → (D5-1로)                      2) 아니다 → (D6으로)

D5-1. (D5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외 공적 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급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등	개인연금 (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 등)
월 연금액 (만 원)	월( )만 원	월( )만 원	월( )만 원	월( )만 원	월( )만 원

D6. 귀하께서 국민연금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b>E</b>	<b>노후생활 준비</b>
----------	----------------

E1 - E2. 귀하가 생각하시는 월 평균 노후생활비는 얼마입니까?

	E1. 최소수준	E2. 적정수준
개인기준 (월)	월 평균( )만 원	월 평균( )만 원
부부기준 (월)	월 평균( )만 원	월 평균( )만 원

E3.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언제부터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 1) 오래 전부터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 2) 최근에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 3)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 4) 당장의 생계유지가 급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b>F</b>	<b>조사 통계를 위한 문항</b>
----------	---------------------

F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F2. 현재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명

F3. 현재 귀댁의 가구 형태는 무엇입니까?

1) 독인가구

2) 1세대 가구(부부)

3) 2세대 가구(부부+자녀)

4) 편부모+자녀

5)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6) 조부모+손자녀

7) 기타(무엇:

)

F4.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초(국)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예정)

5) 4년제 대학졸(예정)

6) 대학원 재학(수료) 이상

F5. 귀하의 나이(연세)는 몇 세입니까?

만  세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3

---

### 제4차 한국복지패널(2009) 분석 결과

#### 1. 한국복지패널 개요

-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 ‘자활패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한 것으로 2006년에 제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7,072 가구)를 실시하였음.
-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상태, 사회보험 가입, 주거, 생활비, 소득, 부채, 재산, 생활여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서비스 이용 등임.
- 제4차 한국복지패널은 2009년에 조사된 것으로 조사 완료된 가구 수는 6,207가구임.

#### 2. 국민연금

- 공적연금 가입 형태 및 제도

단위: 명, %

구분		농림어업	비농업	계
공적연금가입형태	비해당(만60세이상)	962 (62.3)	1,346 (24.2)	2,308 (32.5)
	미가입(A)	14 (0.9)	70 (1.3)	84 (1.2)
	연금수급	370 (24.0)	297 (5.3)	667 (9.4)
	연금가입(B)	197 (12.8)	3,845 (69.1)	4,042 (56.8)
	연금수급하면서 가입(C)	-	10 (0.2)	10 (0.1)
	소계	1,543 (100.0)	5,568 (100.0)	7,111 (100.0)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A)	경제적 여유	10 (76.9)	26 (37.7)	36 (43.9)
	제도불신	1 (7.7)	5 (7.2)	6 (7.3)
	가입필요성 없음	2 (15.4)	37 (53.6)	39 (47.6)
	기타	-	1 (1.4)	1 (1.2)
	소계	13 (100.0)	69 (100.0)	82 (100.0)
공적연금에 가입하 고 있는 연금제도 (B+C)	국민연금	197 (100.0)	3,523 (91.4)	3,720 (91.8)
	공무원연금	-	260 (6.7)	260 (6.4)
	사학연금	-	41 (1.1)	41 (1.0)
	군인연금	-	25 (0.6)	25 (0.6)
	별정직우체국연금	-	6 (0.2)	6 (0.1)
	소계	197 (100.0)	3,855 (100.0)	4,052 (100.0)

## ○ 국민연금 가입종별

단위: 명, %

구분	농림어업	비농업	계
직장가입자	22 (11.2)	2,279 (64.7)	2,301 (61.9)
지역가입자	166 (84.3)	1,212 (34.4)	1,378 (37.1)
임의가입자	4 (2.0)	16 (0.5)	20 (0.5)
임의계속가입자	5 (2.5)	14 (0.4)	19 (0.5)
소계	197 (100.0)	3,521 (100.0)	3,718 (100.0)

## ○ 국민연금 미납 여부 및 사유

단위: 명, %

구분		농림어업	비농업	계
국민연금 납입여부	납부	116 (58.9)	2,759 (78.3)	2,875 (77.3)
	미납	81 (41.1)	764 (21.7)	845 (22.7)
	소계	197 (100.0)	3,523 (100.0)	3,720 (100.0)
국민연금 미납유형	납부예외자(A)	69 (85.2)	665 (87.0)	734 (86.9)
	보험료 미납(B)	12 (14.8)	99 (13.0)	111 (13.1)
	소계	81 (100.0)	764 (100.0)	845 (100.0)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A)	실직, 휴직, 사업중단	17 (24.6)	150 (22.6)	167 (22.8)
	3개월이상 입원	-	2 (0.3)	2 (0.3)
	생활곤란	52 (75.4)	504 (75.9)	556 (75.9)
	학업	-	2 (0.3)	2 (0.3)
	기타	-	6 (0.9)	6 (0.8)
	소계	69 (100.0)	664 (100.0)	733 (100.0)
국민연금 미납이유 (B)	경제적여유 없음	8 (66.7)	72 (67.9)	80 (67.8)
	제도불신	4 (33.3)	29 (27.4)	33 (28.0)
	생활걱정 없음	-	5 (4.7)	5 (4.2)
	소계	12 (100.0)	106 (100.0)	118 (100.0)



## ○ 국민연금 수급 종류 및 수급액

단위: 명, %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농림어업	국민연금급여 종류	노령연금	293	87.7	87.7
		장애연금	1	.3	88.0
		유족연금	39	11.7	99.7
		분할연금	1	.3	100.0
		소계	334	100.0	
	국민연금수급액 (연간총액) 평균=186.93만 원 표준편차=117.01만 원	100만 원 미만	12	3.6	3.6
		100-200만 원 미만	231	68.8	72.3
		200-300만 원 미만	57	17.0	89.3
		300-400만 원 미만	22	6.5	95.8
		400-500만 원 미만	7	2.1	97.9
		500-600만 원 미만	4	1.2	99.1
		600-700만 원 미만	1	.3	99.4
		700만 원 이상	2	.6	100.0
소계	336	100.0			
비농업	국민연금급여 종류	노령연금	243	89.0	89.0
		장애연금	4	1.5	90.5
		유족연금	26	9.5	100.0
		소계	273	100.0	
	국민연금수급액 (연간총액) 평균=247.23만 원 표준편차=169.96만 원	100만 원 미만	10	3.7	3.7
		100-200만 원 미만	140	51.3	54.9
		200-300만 원 미만	57	20.9	75.8
		300-400만 원 미만	23	8.4	84.2
		400-500만 원 미만	11	4.0	88.3
		500-600만 원 미만	12	4.4	92.7
		600-700만 원 미만	12	4.4	97.1
		700만 원 이상	8	2.9	100.0
	소계	273	100.0		

## 3. 건강보험

## ○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종류

단위: 명, %

구분		농림어업	비농업	계
건강보험 가입여부	가입 (A)	1,484 (96.2)	5,404 (96.9)	6,888 (96.7)
	미가입 (B)	59 (3.8)	175 (3.1)	234 (3.3)
	소계	1,543 (100.0)	5,579 (100.0)	7,122 (100.0)
가입 종류	직장가입자	932 (62.9)	3,536 (65.6)	4,468 (65.0)
	지역가입자	549 (37.1)	1,856 (34.4)	2,405 (35.0)
	소계	1,481 (100.0)	5,392 (100.0)	6,873 (100.0)
미가입자의 혜택 종류	의료급여1종	28 (47.5)	59 (33.7)	87 (37.2)
	의료급여2종	16 (27.1)	112 (64.0)	128 (54.7)
	국가유공자무료진료	14 (23.7)	4 (2.3)	18 (7.7)
	기타	1 (1.7)	-	1 (0.4)
	소계	59 (100.0)	175 (100.0)	234 (100.0)

## ○ 건강보험료 미납 여부 및 사유

단위: 명, %

구분		농림어업	비농업	계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있다	15 (1.0)	253 (4.7)	268 (3.9)
	없다	1,458 (99.0)	5,121 (95.3)	6,579 (96.1)
	소계	1,473 (100.0)	5,374 (100.0)	6,847 (100.0)
건강보험료 미납 이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 어서	-	14 (5.9)	14 (5.5)
	납부할 돈이 없 어서	14 (93.3)	189 (79.1)	203 (79.9)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	3 (1.3)	3 (1.2)
	제도에 대한 불신	-	3 (1.3)	3 (1.2)
	납부기한을 잊어서	1 (6.7)	28 (11.7)	29 (11.4)
	기타	-	2 (0.8)	2 (0.8)
	소계	15 (100.0)	239 (100.0)	254 (100.0)

## 부록 4

---

###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2009) 분석 결과

#### 1. 국민노후보장패널 개요

-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만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음.
- 2009년에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본 조사를 실시함.
  - 2010년에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년도 부가조사를 실시함(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와 노후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40대	58	3.2
	50대	790	43.2
	60대	750	41.0
	70대 이상	232	12.7
	계	1,830	100.0
농림어업	40대	17	1.5
	50대	207	17.8
	60대	510	43.9
	70대 이상	429	36.9
	계	1,163	100.0

## 2. 국민연금

### ○ 공적연금 가입 여부 및 유형

구분		연령		계
		60세미만	60세이상	
비농림어업	가입	493 (58.1)	164 (16.7)	657 (35.9)
	국민연금	457 (92.7)	153 (93.3)	610 (92.8)
	공무원연금	29 (5.9)	8 (4.9)	37 (5.6)
	사학연금	6 (1.2)	3 (1.8)	9 (1.4)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 (0.2)	-	1 (0.2)
	미가입	355 (41.9)	818 (83.3)	1173 (64.1)
	계	848 (100.0)	982 (100.0)	1830 (100.0)
농림어업	가입	77 (34.4)	31 (3.3)	108 (9.3)
	국민연금	77 (100.0)	31 (100.0)	108 (100.0)
	공무원연금	-	-	-
	사학연금	-	-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	-
	미가입	147 (65.6)	908 (96.7)	1055 (90.7)
계	224 (100.0)	939 (100.0)	1163 (100.0)	

## ○ 국민연금 납부방식

구분		연령		전체
		60세미만	60세이상	
비농림어업	사업장가입자	256 (56.0)	67 (43.8)	323 (53.0)
	지역가입자	199 (43.5)	80 (52.3)	279 (45.7)
	임의/임의계속가입자	2 (0.4)	6 (3.9)	8 (1.3)
	계	457 (100.0)	153 (100.0)	610 (100.0)
농림어업	사업장가입자	6 (7.8)	1 (3.2)	7 (6.5)
	지역가입자	67 (87.0)	30 (96.8)	97 (89.8)
	임의/임의계속가입자	4 (5.2)	-	4 (3.7)
	계	77 (100.0)	31 (100.0)	108 (100.0)

##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여부

구분		연령		계
		60세미만	60세이상	
비농림어업	계속 납부 중	430 (90.1)	48 (30.2)	478 (75.2)
	납부 종료	47 (9.9)	111 (69.8)	158 (24.8)
	계	477 (100.0)	159 (100.0)	636 (100.0)
농림어업	계속 납부 중	74 (96.1)	17 (53.1)	91 (83.5)
	납부 종료	3 (3.9)	15 (46.9)	18 (16.5)
	계	77 (100.0)	32 (100.0)	109 (100.0)

## ○ 공적연금 납부종료 사유

구분		연령		계
		60세미만	60세이상	
비농림어업	연금수급권자가 되어	6 (12.8)	99 (89.2)	105 (66.5)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17 (36.2)	3 (2.7)	20 (12.7)
	퇴직	16 (34.0)	5 (4.5)	21 (13.3)
	국민연금 납부방식 변경	8 (17.0)	1 (0.9)	9 (5.7)
	국민연금 납부예외	-	2 (1.8)	2 (1.3)
	국민연금 적용제외	-	1 (0.9)	1 (0.6)
	계	47 (100.0)	111 (100.0)	158 (100.0)
농림어업	연금수급권자가 되어	-	11 (78.6)	11 (64.7)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1 (33.3)	2 (14.3)	3 (17.6)
	퇴직	2 (66.7)	1 (7.1)	3 (17.6)
	계	3 (100.0)	14 (100.0)	17 (100.0)

## ○ 국민연금 수급 종류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노령연금	432	91.7
	유족연금	37	7.9
	장애연금	2	0.4
	계	471	100.0
농림어업	노령연금	290	90.3
	유족연금	30	9.3
	장애연금	1	0.3
	계	321	100.0

## ○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평균=245.908천원 표준편차=171.394천원)	1-50천원 이하	2	0.4
	51-100천원 이하	37	7.8
	101-200천원 이하	233	49.3
	201-300천원 이하	82	17.3
	301-400천원 이하	48	10.1
	401-500천원 이하	35	7.4
	501-1,000천원 이하	29	6.1
	1,000천원 이상	7	1.5
	계	473	100.0
농림어업 (평균=166.003천원 표준편차=100.977천원)	51-100천원 이하	49	15.2
	101-200천원 이하	203	62.8
	201-300천원 이하	49	15.2
	301-400천원 이하	11	3.4
	401-500천원 이하	5	1.5
	501-1,000천원 이하	5	1.5
	1,000천원 이상	1	0.3
	계	323	100.0



## ○ 가구소득 대비 국민연금 소득 비중(월 기준)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10% 이하	202	50.8
	10-20% 이하	115	28.9
	20-30% 이하	46	11.6
	30-40% 이하	19	4.8
	40-50% 이하	7	1.8
	50-60% 이하	7	1.8
	60-70% 이하	2	0.5
	계	398	100.0
농림어업	10% 이하	123	42.4
	10-20% 이하	106	36.6
	20-30% 이하	37	12.8
	30-40% 이하	16	5.5
	40-50% 이하	4	1.4
	50-60% 이하	3	1.0
	60-70% 이하	1	0.3
	계	290	100.0

## 3. 건강보험

## ○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가입되어 있다	1,798	98.3
	가입되어 있지 않다	32	1.7
	계	1,830	100.0
농림어업	가입되어 있다	1,141	98.1
	가입되어 있지 않다	22	1.9
	계	1,163	100.0

## ○ 국민건강보험료 청구 대상자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나의 명의로 되어 있다	1,041	57.9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다	757	42.1
	계	1,798	100.0
농림어업	나의 명의로 되어 있다	197	17.3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다	944	82.7
	계	1,141	100.0

## ○ 의료급여대상자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예	28	87.5
	아니오	4	12.5
	계	32	100.0
농림어업	예	21	100.0
	아니오	-	-
	계	21	100.0

## ○ 국민건강보험료납부 방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직장가입자	627	60.3
	지역가입자	413	39.7
	계	1,040	100.0
농림어업	직장가입자	10	5.1
	지역가입자	187	94.9
	계	197	100.0

##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농림어업 (평균=70.634천원 표준편차=61.943천원)	50천원 이하	518	52.8
	50-100천원 이하	251	25.6
	100-200천원 이하	181	18.5
	200-300천원 이하	27	2.8
	300-400천원 이하	3	0.3
	400-500천원 이하	-	-
	500천원 이상	1	0.1
	계	981	100.0
농림어업 (평균=47.238천원 표준편차=40.763천원)	50천원 이하	125	64.8
	50-100천원 이하	51	26.4
	100-200천원 이하	16	8.3
	200-300천원 이하	-	-
	300-400천원 이하	1	0.5
	400-500천원 이하	-	-
	500천원 이상	-	-
	계	193	100.0

## ○ 소득분위별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구분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계
비농림어업	1분위	192 (98.5)	3 (1.5)	195 (100.0)
	2분위	391 (95.6)	18 (4.4)	409 (100.0)
	3분위	576 (99.3)	4 (0.7)	580 (100.0)
	4분위	588 (99.5)	3 (0.5)	591 (100.0)
	계	1,747 (98.4)	28 (1.6)	1,775 (100.0)
농림어업	1분위	511 (97.9)	11 (2.1)	522 (100.0)
	2분위	309 (97.2)	9 (2.8)	318 (100.0)
	3분위	142 (98.6)	2 (1.4)	144 (100.0)
	4분위	150 (100.0)	-	150 (100.0)
	계	1,112 (98.1)	22 (1.9)	1,134 (100.0)

주) '소득 1분위': 월평균소득 200천원 미만, '소득 2분위': 월평균소득 200-700천원 미만, '소득 3분위': 월평균소득 700-1,200천원 미만, '소득 4분위': 월평균소득 1,200천원 이상

## ○ 소득분위별 국민건강보험료 청구 대상자

구분		나의 명의로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다	계
비농림어업	1분위	44 (22.9)	148 (77.1)	192 (100.0)
	2분위	135 (34.5)	256 (65.5)	391 (100.0)
	3분위	370 (64.2)	206 (35.8)	576 (100.0)
	4분위	467 (79.4)	121 (20.6)	588 (100.0)
	계	1,016 (58.2)	731 (41.8)	1,747 (100.0)
비농림어업	1분위	30 (5.9)	481 (94.1)	511 (100.0)
	2분위	80 (25.9)	229 (74.1)	309 (100.0)
	3분위	38 (26.8)	104 (73.2)	142 (100.0)
	4분위	44 (29.3)	106 (70.7)	150 (100.0)
	계	192 (17.3)	920 (82.7)	1,112 (100.0)

주) '소득 1분위': 월평균소득 200천원 미만, '소득 2분위': 월평균소득 200-700천원 미만, '소득 3분위': 월평균소득 700-1,200천원 미만, '소득 4분위': 월평균소득 1,200천원 이상

## 부록 5

---

### 한국의료패널(2008) 분석 결과

#### 1. 의료패널 개요

-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의료이용행태와 의료비 지출규모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하고 있으며, 2008년도 한국의료패널은 상반기 조사가 8,292가구이고, 하반기 조사가 7,768가구 임.

#### 2.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가입형태

구분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계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	13,920	61.4	1,089	56.4	15,009	61.0
건강보험(지역가입자)	7,838	34.5	716	37.1	8,554	34.7
	21,758					
의료급여1종	414	1.8	81	4.2	495	2.0
의료급여2종	388	1.7	17	0.9	405	1.6
특례자(국가유공자등)	90	0.4	26	1.3	116	0.5
미가입	7	0.0	1	0.1	8	0.0
자격상실	18	0.1	0	0.0	18	0.1
급여정지	11	0.0	0	0.0	11	0.0
계	22,686	100.0	1,930	100.0	24,616	100.0

## ○ 국민건강보험료 청구 대상자

구분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계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본인	15,864	72.6	782	42.7	16,646	70.3
배우자	2,463	11.3	71	3.9	2,534	10.7
기타가구원	1,966	9.0	138	7.5	2,104	8.9
비가구원	1,555	7.1	840	45.9	2,395	10.1
계	21,848	100.0	1,831	100.0	23,679	100.0

## ○ 국민건강보험 가입형태

구분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계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	6,739	63.8	1,089	56.4	7,828	62.6
건강보험(지역가입자)	3,527	33.4	716	37.1	4,243	33.9
	10,266					
의료급여1종	132	1.2	81	4.2	213	1.7
의료급여2종	92	0.9	17	0.9	109	0.9
특례자(국가유공자등)	64	0.6	26	1.3	90	0.7
미가입	2	0.0	1	0.1	3	0.0
자격상실	11	0.1	0	0.0	11	0.1
급여정지	2	0.0	0	0.0	2	0.0
계	10,569	100.0	1,930	100.0	12,499	100.0

## ○ 국민건강보험료 청구 대상자

구분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계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빈도(명)	비중(%)
비해당(의료급여자 등)	239	2.3	99	5.1	338	2.7
본인	6,708	63.5	782	40.5	7,490	59.9
배우자	1,458	13.8	71	3.7	1,529	12.2
기타가구원	1,269	12.0	138	7.2	1,407	11.3
비가구원	895	8.5	840	43.5	1,735	13.9
계	10,569	100.0	1,930	100.0	12,499	100.0



## 참고 문헌

- 강성호. 2011.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재정학연구」 4(2): 89~121.
- 강성호 외. 2008. 「국민연금 미수급자 규모 추정과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향」, 국민연금연구원.
- 구인회, 백학영. 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175~204.
- 국민연금연구원. 2010.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 국회입법조사처.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III」.
- 김성숙. 2000. 「국민연금 농어민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 김성숙 외. 2001.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 김성숙 외. 2008.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 김수봉 외. 200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명. 2003.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그들은 누구인가?” 「월간 복지동향」 57: 9~12.
- 김용하. 1996. “농어촌지역 국민연금관리의 현안과제와 대책.” 「보건복지포럼」 2: 40~46.
- 김원섭. 2007. “최근 독일 연금개혁과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2): 161~188.
- 김원훈. 2001.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체납요인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제선, 문용필. 2011. “건강보험료 체납과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요인.” 「제4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p. 325~341.
- 김진수 외. 2009.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김태완 외. 2009.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1. 「2011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 남호원. 2010. 「국민연금제도 수급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국민연금수급권 취득운동을 중

- 심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박대식, 최경환. 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1.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5.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05~'09) 중간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9a. 「영세·고령농의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9b.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9c.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10. 「농어업인 건강·안전 증진 지원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종덕. 2010. “독일의 질병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개혁동향.” 「건강보장정책」 9(2): 170~179.
- 박종연 외. 2007. “국민의 건강보험 인식과 만족에 대한 조사방법의 개발.” 「보건과 사회과학」 22: 97~126.
- 백운국 외. 2003. 「지역가입자 체납유형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 백운국 외. 2004.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2011. 「2010 보건복지백서」.
- 서남규, 이용갑. “국민건강보험제도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7: 167~184.
- 석재은. 2002.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70: 5~19.
- 석재은. 200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한국사회복지학」 53: 285~309.
- 손경미. 2008.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결손 후 재체납 관련요인 분석: 2005년 한시적 보험료 지원세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영석. 2009. “저소득층 건강보장 전략.” 「보건복지포럼」 151: 79~91.
- 신영석. 2010.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한 서민의료복지 증진방안.” 「건강보장정책」 9(2): 8~24.
- 신영석 외. 2010.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전. 2010.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한국사회정책」 17(1): 95~127.
- 신자은. 2009.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5(2): 21~45.
- 신현웅. 2009.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155: 5~16.
- 신혜숙. 2005.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희원. 2007.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연금제도연구실. 2010. 「OECD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와 개혁동향」. 국민연금연구원.
- 유원섭. 2010.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건강보험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건강보장정책」 9(2): 25~36.
- 유호선, 강성호. 2010.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감면을 위한 함의.” 「한국사회정책」 17(3): 9~39.
- 윤석명 외. 2009a.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 외. 2009b.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 외. 2010.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광석. 200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 173~201.
- 이상선. 2002.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농어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외. 2009. 「건강보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선미 외. 2010. “건강보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방안.” 「건강보장정책」 9(1): 52~69.
- 이용갑. 2009.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보건사회연구」 29(2): 186~212.
- 이용갑 외. 2009.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용재, 김승연. 2006.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이용의 형평성.” 「사회복지정책」 24: 173~199.

- 이현주 외. 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흥재. 2010.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1(2): 203~227.
- 정명채 외. 1998. 「국민건강보험의 농어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박대식 외. 1998. 「국민의료보험 통합과 농어촌 적용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영호 외. 2010.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희정 외. 2011.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1: 209~232.
- 최경환. 2008.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박대식. 2006.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황의식. 2007.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08.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 통계청. 2011. 「2011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 결과」.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2003. 「농가 경제·사회·복지실태조사 보고서: 소농가를 중심으로」.
- 허순임. 2008. “건강보험 관련 복지인식.” 「보건복지포럼」: 32~42.
- Padro, Fernando. F. 2004. *Statistical Handbook on the Social Safety Net*. London: Greenwood Press.
- McDonald. Ann. 2010.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Cambridge: Polity Press.

---

C2011-44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1.  
발 행 2011. 11.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mailto: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